

현안분석 2005-20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연구

김 정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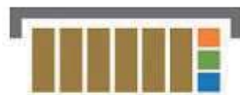
일본의 국립대학법인법 연구

A Study on the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Law of Japan

연구자 : 김정순(연구위원)

Kim, Jeong-Soon

2005. 12.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국문 요약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은 국립대학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작업을 오래 전부터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립대학을 정부조직에서 분리시켜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개혁 추진이 국립대학 등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마침내 2003년 7월 국립대학법인법이 제정됨으로써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4년 4월부터 국립대학법인이 설립되었다.

일본정부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성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독립이라는 명칭은 허울에 불과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국비의 차등지원으로 국립대학의 정부예속화를 가속화시키고 기초학문분야의 왜소화와 지방대학의 침체를 가져옴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사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학문의 성과를 평가하여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율에 따르는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대 특별법 등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개혁이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련한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의 국립대학법인화의 성립경위, 국립대학법인법을 비롯한 국립대학법인화관련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아본다.

※ 키워드 : 국립대학, 법인, 국립대학법인법,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Abstract

Confronted with an age of globalization and unlimited competition, one of Japan's programs for reformation of its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incorporation of them. After national universities' opposition to the government's reform plan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law for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was finally made in July, 2003 and was enforced from October 1, 2003. Since April, 2004,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s have been set up.

According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purposes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their autonomy and academic accomplishment. However, there have been opposite arguments that the incorporation has brought about national universities' subordination to the government due to unequal financial support based on evaluation. Also, the autonomy has been restricted since fundamental studies and local universities have been depressed.

Through incorporation, national universities become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The governing body of each national university will decide its major policie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will be different based on their academic accomplish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laws regarding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at the time when the Korean government moves to reform national uni-

versities through making special laws for national university.

Thus, this paper will review the history of the incorporation and issues on laws for incorporation in Japan.

※ Key words :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Incorporation Law for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s Autonomy**

목 차

국문 요약	3
영문 요약	5
제 1 장 서 론	9
제 2 장 국립대학법인화의 성립 경위	11
1.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 정책의 경위	11
2. 재정유도에 의한 법인화 반대운동의 억제	12
3. 국립대학법인법안의 국회심의 경과	12
4. 국립대학법인법에 대한 중·참의원 부대결의	13
제 3 장 국립대학법인화 관련법의 내용	21
제 1 절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21
1. 총 칙	22
2. 조직 및 업무	27
3.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29
4. 재무 및 회계	28
5. 기 타	30
제 2 절 국립대학법인화 관련 부수 법의 주요 내용	30
1. 독립행정법인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의 개요	30
2.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의 개요	31
3.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의 개요	33
4. 독립행정법인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의 개요	34
5. 독립행정법인법등의시행에의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 법률의 개요	35

제 4 장 국립대학법인법의 검토	37
제 1 절 입법론상의 논점	37
1.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법인화의 제도적 취지	37
2. 국립대학법인화 반대의 논점	38
제 2 절 국립대학법인법의 구체적 검토	40
1. 법인인 국립대학	40
2. 국립대학법인과 독립행정법인	41
3. 중기목표·중기계획 및 평가	44
4. 임원의 임면	46
5. 내부조직	48
6. 직 원	50
7. 재무 및 회계	54
8. 재점검 조항의 필요성	56
제 5 장 결 어	57
참 고 문 헌	59
◆ 부 록	
(일본) 국립대학법인법	61

제1장 서론

지식기반사회,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대학에도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초과공급 상태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내 및 국제적 대학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변화된 환경 앞에 대학경영 또한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거센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교육개방을 앞두고 생존을 위해서도 대학개혁이 필수적이 되어 버렸다. 그 중에서도 국립대학은 전체 고등교육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능과 비효율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정부는 2000년 12월 ‘국립대학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16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특별법안’¹⁾이 제안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국립대학 개혁을 위한 다각도의 움직임이 있다.²⁾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는 국립대학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작업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국립대학을 정부조직에서 분리시켜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나 국립대학 등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

1)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은 2002년 11월 13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1인의 명의로 국회에 제안된 법률이다(의안번호 : 162010). 주요골자는,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의사결정과 조직, 정원, 인사, 예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안 제1조), 대학별 중·장기 대학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및 평가(안 제5조), 대학재정위원회 설치(안 제6조), 직위공모제의 도입(안 제9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에 의한 교직원 임용허용(안 제10조), 국가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 설치(안 제11조),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운영비 등으로 지원(안 제15조), 예산편성지침 작성(안 제17조),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의한 학생납부금 결정(안 제28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에 대한 시정 및 변경 명령권과 대학재정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취소권(안 제31조) 등이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식적 논의기구인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2005년 9월 1일 1차회 의)를 구성하여 현행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경쟁력 강화 및 대학운영체제의 자율화·다양화 차원에서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관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된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중이며, ‘협의회’에서 마련된 방안은 「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있어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다가 2003년 7월에 ‘국립대학법인법’³⁾이 제정(2003년 10월 1일 시행)되어 2004년 4월부터 국립대학법인이 성립되었다.

일본정부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성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 교수협회는 독립이라는 명칭은 허울에 불과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국비의 차등지원으로 국립대학의 정부예속화를 가속화시키고 기초학문분야의 왜소화와 지방대학의 침체를 가져옴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는 정부(문부과학성)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국립대학법인화에 의해 학장과 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학외 제3자를 학교경영에 참여시켜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연구 및 경영 등의 성과를 평가하여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국립대학이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립대학법인화는 기존의 국립대학과 기본적인 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립대 관련 입법 움직임 등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관련한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국립대학법인화의 성립 경위를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국립대학법인법을 비롯한 국립대학법인화 관련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국립대학법인법을 검토한다.

3) 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2호, 최종개정: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제 2 장 국립대학법인화의 성립 경위

1.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 정책의 경위⁴⁾

일본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포함하여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부문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무원을 25% 감축하는 자유당·小澤一郎氏와 자민당·小惠三元 총리의 공약에 맞춰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위한 산학연계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안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에 「행정의 감량화·효율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개혁추진본부가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를 제안하였다. 여기에 대해 당시 문부성은 강하게 반대⁵⁾하였으나, 그 후 입장을 바꾸어 독립행정법인화를 용인하였고, 1999년 9월에 문부성은 공식적으로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의 방침을 주창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학교직원조합, 대학교수회, 국립대학협회(이하 “국대협”이라 한다.)까지 반대의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은 2000년 5월에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을 이용하여 국공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를 추진한다고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국대협은 2000년 6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독립행정법인화에 명확히 반대하였다.

2001년 6월에 문부과학장관은 임시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안을 내고, 산학연계를 위해 국립대학의 통폐합·법인화 추진·‘톱 30’ 육성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2001년 7월에는 톱 30(개) 육

4) 田中真介, “国立大学法人法の問題点”, 『大学創造』, 第14号(2004), 高等教育研究会(編), 60-61쪽.

5) 문부장관은 행정개혁추진본부의 국립대학 독립행정법인화 제안에 대하여 3~5년간 목표를 제시하고 대학이 이에 따라 교육연구계획을 작성, 실시하는 구조 및 계획종료 후에 업무계속의 필요성, 설치 법인의 재평가가 제도화되는 구조는 대학의 자주적인 교육연구활동을 저해하고 교육연구수준의 대폭 저하를 초래하여 대학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여 반대하였다. 이는 대학관계측의 국립대학법인법화에 대한 반대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성정책으로 다음 년도에 210억엔을 100(개) 전공·과학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2. 재정유도에 의한 법인화 반대운동의 억제

2002년에 정부·문부과학성이 새로운 국립대학법인화안(최종보고)을 제안할 때에 「이번 법인화안은 국립대학법인으로 하는 것이고 독립행정법인은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독립행정법인화(이하 “독법화”라고 한다.) 반대운동은 전체적으로 억제되었다. 또한 ‘톱 30’ 정책에 의하여 법인화 반대운동은 시들해지게 되었다. 종래 가장 독립법인화에 반대하여온 대학조차도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t)로 명칭을 바꿔 실시되는 ‘톱 30’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자 독법화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COE 자금을 많이 받은 대학에 공통되는 경향이였다. 그리고 같은 대학 안에서도 부속병원이나 사무국 등 COE와 관계없는 부서에서는 반대자가 줄지 않았으나, 공학부나 이학부, 부속연구소에서는 반대자가 격감하였다.⁶⁾

3. 국립대학법인법안의 국회심의 경과⁷⁾

문부과학성의 조사검토회의는 2001년 9월 27일에 먼저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의 「중간보고」를 공표하였다. 대학예산삭감이나 기업화·민영화에 대한 위험 등 많은 염려나 비판이 표명되었지만 문부과학성은 개의치 않고 2002년 3월 26일에는 「최종보고」⁸⁾를 발표하였다.

그 후 문부과학성은 2003년 1월 31일에는 「국립대학법인법안 개요」를 정식으로 국립대학협회에 제시하였다. 2월 20일에 협회의 국대협법인화

6) 이러한 결과는 국립대학에서 얼마나 항상적인 연구자금이 부족한가를 나타내 주는 한편, 법인화에 앞선 정부의 연구비 지원전략은 연구자를 침묵시켜 독립행정법인화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데 효력을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반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국립대학의 발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고 법인화 후에는 운영비교부금의 통제에 의해 정부의 정책을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곤란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앞글, 61쪽.

7) 앞글, 61쪽.

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houdou/14/03/020327.htm(2005.10.25. 방문).

특별위원회는 「법안개요」를 승인하고, 국대협 정레이사회에서도 승인되어서 문부과학성에 보고되었다. 이를 기초로 일본 정부는 2월 28일에 「국립대학법인법안」을 각의 결정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2003년 5월 22일에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7월 9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법인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4년 4월에 국립대학은 「법인」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성립되었지만, 중의원의 문부과학위원회에서는 10항목, 참의원의 문교과학위원회에서는 새로이 23항목이 부대결의에 붙여져, 이 법안에 대한 염려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4. 국립대학법인법에 대한 중·참의원 부대결의⁹⁾

(1) 중의원문부과학위원회(2003년 5월 16일)

국립대학법인법안,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안,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안,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안, 독립행정법인 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안 및 국립대학법인등의 시행에 수반되는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

정부 및 관계자는 본법의 시행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특단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있어서 헌법에서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나 대학 자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특성을 충분히 배려함과 함께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자주적·자율적인 운영의 확보에 노력할 것.
2. 국립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학장, 임원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 등이 각각의 역할·기능을 충분히 수행함과 함께 상호 연계를 밀접히 하여 민주적·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또한 교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할 것.
3. 임원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높은 식견을 갖고, 당해 대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도록 노력할 것.

9)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大学法人法の問題点と対策, 東京文久堂, 2004, 76~82쪽.

4. 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의 작성 및 중기계획의 인가에 있어서,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서서 적절히 행할 것.
5. 국립대학의 평가에 있어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행함과 함께 기초적인 학문분야의 계승발전이나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 문화, 산업 등의 기반을 유지하는 역할도 충분히 고려할 것. 또한 중기목표 등의 업적평가와 자원배분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서서 신중한 운용에 노력할 것.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대해서 높은 식견을 가진 자로 선임할 것.
6. 운영비교부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기준에 따라 행함과 함께 법인화 전의 公費투입액을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한 운영비교부금 등을 조치하도록 노력할 것. 또한 학생납부금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학생의 진학기금을 빼앗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노력할 것.
7. 국립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연구의 개성화, 활성화, 고도화가 한층 진전되도록 배려할 것.
8. 국가는 고등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공·사립 전체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충실에 노력할 것. 또한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의 수준 향상과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지방 학교의 정비·충실에 노력할 것.
9. 직원의 신분이 비공무원으로 되는 것에 의한 근무조건 등의 정비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의 특성을 배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또한 대학의교원등임기에관한법률의 운용에 있어서는 교육연구의 진전에 이바지하도록 배려할 것.
10. 공립의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직원 처우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육직원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후로도 견지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준거하는 규정이 제외됨으로써 동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

(2) 참의원문교과학위원회 (2003년 7월 18일)

국립대학법인법안,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안,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안,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

법안, 독립행정법인 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안 및 국립대학법인법등의 시행에 수반되는 관계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결의

정부 및 관계자는 국립대학 등의 법인화가 일본의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 비추어, 본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1.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나 대학 자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특성을 충분히 배려함과 함께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자주적·자립적 운영을 확보할 것.
2.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에 있어서는 학장, 임원회, 경영협의회, 교육연구평의회 등이 각각의 역할·기능을 충분히 달성함과 함께, 학교전체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직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하는 합의형식에 노력할 것. 또한 교수회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배려할 것.
3. 임원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높은 식견을 갖고 당해 대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함과 동시에, 선임 이유 등을 공표할 것. 또한 정부나 타법인으로부터의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당하지 않도록 절도있게 대응할 것. 감사의 임명에 있어서는 대학의 의향을 반영할 것.
4. 학장전형회의의 구성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히 현 학장이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히 운용할 것.
5. 중기목표의 실제상 작성주체가 법인인 점에 비추어, 문부과학장관이 중기목표·중기계획의 원안을 변경한 경우의 이유 및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의 의견 공표 등을 통해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과 함께 원안의 변경은 재정상 이유 등 정말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할 것.
6. 법인에 요청하는 중기목표·중기계획에 관한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극히 간소화를 도모할 것. 또한 평가에 관한 업무가 교직원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7. 국립대학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학문분야의 계승발전과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 문화, 산업 등의 기반을 지지하고 있는 역할에도 충분히 배려할 것. 또한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 대학으로부터의

- 의견신청의 기회부여에 대해 법령상 명기하여, 평가의 신뢰성 향상에 노력할 것.
8. 국립대학법인에 의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와 자원배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법 제3조의 취지를 따라 신중한 운용에 노력함과 아울러 계속적으로 재평가할 것.
 9.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의 교육연구나 운영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진 자로부터 선임할 것. 평가위원회의 위원 이름이나 경력 외, 회의의 의사록을 공표함과 함께 의회를 공개하는 등에 의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것.
 10.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및 국립대학법인의 관계에 있어서 대학의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국립대학법인과 독립행정법인의 차이를 충분히 유의할 것.
 11.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35조의 준용에 의한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로부터의 국립대학법인 등의 주요 사무·사업의 개폐 권고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법 제3조의 취지에 충분히 입각하여, 각 대학의 대학 본부와 학부 등의 구체적 조직의 개폐, 개개 교육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 또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의뢰는 직접 대학에 대해 하지 않고 문부과학장관에 대해서 할 것.
 12. 운영비교부금 등의 정산에 있어서는 산정기준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한 후 공표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과 함께 각 법인의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산정방법이 되도록 연구할 것. 또한 법인화 전의 공비투입액에 입각하여 종래 이상으로 각 국립대학에서 의 교육연구가 확실히 실시되는 데 필요한 소요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13. 학생납부금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에 의해 학생의 진학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장래에 걸쳐서 적정한 금액, 수준을 유지함과 함께 수업료 등 감면제도의 충실, 독자 장학금의 창설 등 법인에 의한 학생지원 대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할 것.
 14. 국립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하는 연구조직에 대해서는 대학의 기본적인 조직의 하나인 학술연구의 중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단기적 평가를 엄격히 경계함과 함께 재정지출의 충실에 노력할 것. 또한 각 연구조직의 설치·폐쇄나 전국공동이용화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각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방법의 차이를 충

- 분히 존중하여 신중히 대응할 것.
15. 법인화에 수반되는 노동관계법규 등예의 대응에 대해서는 법인의 성립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면,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또한 법인으로의 이행 후, 새로 필요하게 되는 고용보험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운영비교부금등에 의해 확실히 조치할 것.
 16.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은 진척상황, 문제 등을 명백히 하고, 당 위원회에 보고할 것.
 17.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인증평가제도의 발전을 통해, 국립대학등이 다양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는 환경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에서의 대학평가 전체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자금의 확보, 기타 필요한 원조에 노력할 것.
 18. 국립고등전문학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연구의 개성화, 활성화, 고도화가 한층 진전되도록 노력할 것.
 19. 국가는 고등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공·사립 전체를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의 충실에 노력할 것. 또한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의 수준 향상과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지방 대학의 정비·충실에 노력할 것.
 20. 직원의 신분이 비공무원으로 되는 것에 의하는 근무조건 등의 정비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의 특성을 배려하여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또한 대학의교원등임기에관한법률의 운용에 있어서는 선택적 한정적 임기제라는 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교육연구의 진전에 이바지하도록 배려함과 함께 교원등의 신분 보장에 충분히 유의할 것.
 21. 법인에로의 이행시에는 '양호한 노동관계'라는 관점에서 관계직원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것.
 22. 공립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직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학교의교직원의인재확보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금후에도 견지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준거하는 규정이 제외됨으로써 동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
 23. 고등교육의 큰 틀의 검토에 있어서는 생애학습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전문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전체에 대해서 관계부성,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에 입각하여 행할 것.

〈 국립대학법인화까지의 동향 〉

1971년	6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금후 학교교육의 종합적인 확충을 위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에서, 고등교육의 다양화와 국공립대학을 새로운 형태의 법인으로 할 것을 제언
1987년	4월	臨敎審 제3차 답신에서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대학의 자기평가 검토 제언
	9월	대학심의회 설치
1991년	4월	학위수여기구 창설
	6월	대학설치기준 개정. 기준의 대강화(교양부 개발 등 수업료(항)목 구분의 폐지, 자기점검·평가 노력의무 등)
1995년	3월	경단련, 과학기술기본법의 조기 제정 요망
	9월	대학심의회 답신 「대학운영의 원활화에 대하여」(학장의 리더쉽의 필요성 강조)
	11월	과학기술기본법 공포. 「과학기술창조입국」 제창(연구의 경쟁과 평가에 의한 예산배분)
1996년	6월	학술심의회 답신 「과학기술창조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학술연구의 종합적인 추진에 대하여」(첨단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추진. 기반적 연구보다도 경쟁적 연구의 자금배분비율을 높임)
	7월	과학기술기본계획(제1기) 각의 결정
1997년	6월	대학교원등의임기에관한법률 성립
	12월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회에서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에 대한 검토 제언
1998년	6월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성립
	10월	대학심의회 답신 「21세기의 대학상과 금후 개혁방책에 대하여」에서 제3차 평가시스템의 도입 등 제언
1999년	2월	경제전략회의 「국립대학은 독립행정법인화를 비롯하여 장래 민영화도 고려하여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4월	「국가의 행정조직 등의 감량, 효율화 등에 관한 기본적 계획」을 각의 결정.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대학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2003년도까지 결론을 내린다.」
	5월	국립학교설치법의 일부개정. 국립대학의 평의회, 교수회의 조직권한, 운영자문회 설치
	6월	국립대학협의총회에서 독립행정법인화의 검토 결정 단,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반대
	7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성립
	8월	문부성 「금후 국립대학등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간담회」 발족

1999년	10월	지구별 국립대학장회의 개최. 법인화문제로 학장과 문부성이 의견교환
	11월	국립대학협의총회에서 회장이 담화. 「통칙법 대로는 국립대학을 진정 변용시킬 만한 설계가 될 수 없으므로 설계도 수정이 불가결」
2000년	3월	학위수여기구를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로 개편
	5월	자민당 정무조사회 「금후의 국립대학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제언. 「통칙법의 틀에 입각하면서 특례조치로 국립대학법인을」
	6월	국립대학협의총회에서 법인화를 위한 「설치형태검토특별위원회」설치 결정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성청의 편성 이후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를 각의 결정. 독립 행정법인화 등에 의해 25% 정원삭감 목표 • 문부성 「국립대학 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관한 조사검토회의」발족
	11월	대학심의회 답신 「글로벌화 시대에 요구되는 고등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12월	수상의 사적자문기관 「교육개혁국민회의」가 프로페셔널 스쿨(고도전문 직업인 양성대학원)이나 연구자양성대학원의 창설, 상급학교 진학의 전 분야로의 확대 등을 제언
2001년	1월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된 문부과학성 발족. 대학심의회 등을 중앙 교육심의회분과회로 재편
	3월	과학기술기본계획(제2기) 각의 결정
	6월	문부과학성이 경제재정자문회의에 「대학(국립대학)의 구조개혁 방침」, 「대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플랜」(遠山플랜)을 보고(국립대학의 재편·통합, 「톱 30」, 제3자 평가의 도입,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포함시킴)
	7월	경제산업성의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분과회 산학연계추진소위원회 「기술혁신 시스템으로서의 산학연계 추진과 대학발 벤처창출을 위해」(중간정리)에서 국립대학을 조속히 자유도가 높은 법인으로 이행시킬 것을 제언
	8월	문부과학성의 조사검토회의의 「새로운 『국립대학법인』 상에 대하여」 중간보고. 의견수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규제개혁회의의 「규제개혁의 추진에 관한 제1차 답신」에서 경쟁적 연구자금의 충실과 국립대학에서의 자금의 경쟁적 배분의 철저(2002년도 중에 조치), 대학에 교원평가 도입(2003년도 중에 조치),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관한 방향성 확정(2001년도 중에 조치)을 포함 • 과학기술·학술심의회기술·연구기반부회산학연계추진위원회 「국립대학법인(가칭)에 있어서 산학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심의 개요)

제 2 장 국립대학법인화의 성립 경위

2002년	3월	문부과학성의 조사검토회의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 최종 보고
	4월	국립대학협회임시총회에서 문부과학성검토회의 보고서에 대해 이의 속출. 이례적인 거수채결, 회장담화로 수습
	5월	문부과학성의 「금후의 국립대학등의시설관리에관한조사연구협력자회의」 보고 「『지식의 거점』을 목표로 한 대학의 시설 매니지먼트 - 국립대학법인(가칭)에 대한 시설 매니지먼트의 방식에 대하여 -」
	6월	종합과학기술회의 「산관학 연계의 기본적 고찰법과 추진책」에서 국립대학의 비공무원형법인으로의 이행에 대하여 제언
	10월	문부과학성, 2002년도의 「21세기 COE프로그램」(톱 30)의 선정결과를 발표(50대학 113건)
	11월	국립대학협회의 설치형태검토특별위원회가 법인화에 있어서는 국가가 설치자가 되는 「직접 방식」을 제안
2003년	1월	문부과학성, 국립대학법인법안 개요공표. 각 국립대학이 법인화하는 「간접방식」을 채용. 「법기술적으로 직접방식을 취할 수 없다.」(내각법제국 견해)
	2월	국립대학법인법안관계6법안을 각의 결정, 국회에 제출
	3월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기본법과 교육진흥기본계획의 방식에 대하여」(지식의 세기를 리드하는 대학개혁의 추진책 등)
	4월	중의원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법안관계6법안의 취지설명, 심의개시
	7월	국립대학법인법안관계6법안 가결 성립(중위원에서 10항목, 참의원에서 23항목의 부대결의)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제 3 장 국립대학법인화 관련법의 내용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는 '구 국립학교설치법'¹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던 전국의 89개 국립대학, 15개 대학공동이용기관, 55개 국립고등전문학교,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국립학교재무센터 등의 국가기관을 '국립대학법인법'의 제정을 통하여 89개 국립대학법인과 4개의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¹¹⁾으로 통폐합하며, 또한 개별법인 국립행정법인 고등전문학교기구법,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 독립행정법인 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의 제정으로 4개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재편하고, 그리고 국립대학법인화의 원활한 입법정비의 추진을 위한 국립대학법인법등의시행에의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 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화의 목표는 161개 기관을 97개 법인으로 하는 단순한 대학의 외형상 통폐합이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의 기본틀을 바꾸는 대학사상 획기적인 것이다. 이하 각 법의 개요를 살펴본다.

제 1 절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국립대학법인법의 제정에 의해 국립대학을 각 대학별로 법인화하고,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하며, 대학공동이용기구를 개편한 후 법인화하고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구 국립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 99개(단기대학 포함)와 대학공동이용기관 15개를 국립대학법인 89개,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4개로 통폐합되었다. 2005년에 '국립대학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또다시 몇몇 대학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2개의 국립대학법인이 설치¹²⁾되었다. 이하에서는 국립대학법인법

10) 1949년 법률 제150호로 제정되어 '국립대학법인법등의시행에의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7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됨.

11) 인문문화연구기구, 정보·시스템연구기구, 자연과학연구기구,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를 말한다.

12) '국립대학법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5년 5월 25일, 법률 제49호)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의 교육연구체제의 정비·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의 통폐합에 의한 국립대학법인 富山대학의 설치와 국립대학법인 법과기술단기대학의 폐지와

의 주요내용을 법률의 편제에 따라서 서술하면서도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편제에 상관없이 서술하는 것으로 한다.

1. 총 칙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조항 등의 제1절 통칙과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의 제2절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통칙

목적 조항에서는 ‘고등교육과 학술연구의 수준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인화 사업이 추진되는 것임을 천명한다(동법 제1조).

‘국립대학법인’을 ‘국립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입법적 정의를 내리면서(동법 제2조 제1항),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하 “통칙법”이라 한다.)¹³⁾이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가 이 법률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학이나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의 특성을 배려할 것’(동법 제3조)을 의무지우고 있다.

대학법인등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으로 한다(동법 제7조).

(2)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

제2절에서는 국립대학법인 등의 업무실적 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에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2. 조직 및 업무

제2장은 조직과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세분하여 제1절 국립대학법인과 제2절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 제1관 임원

동시에 국립대한법인 법과기술대학이라는 4년제대학화 등이 이루어졌다(2005년 10월 1일 시행, 신대학의 학생입학은 2006년 6월부터).

13)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3호, 최종 개정 :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13호.

과 직원, 제2관 경영협의회 등, 제3관 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국립대학제도에 비추어 볼 때 학장권한의 강화, 임원회와 경영협의회의 도입, 학외제3자의 참가 등의 특징을 갖는다.

(1) 국립대학법인

1)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및 직원

국립대학법인에는 임원으로 학장(법인의 장), 이사, 감사 2인을 둔다(동법 제10조). 임원 중에서 이사의 수는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동법 부칙 별표 1에서 구체적인 이사 정원(2~8명)을 법정하고 있다.

가) 임원의 임명과 임기

‘임원회’는 학장, 이사, 그리고 감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학장이 임명하고(동법 제13조), 감사는 문부과학장관이 임명한다(동법 제12조 제8항). 각각의 임명권자가 이어나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14조).

학장은 국립대학법인의 신청에 의해 문부과학장관이 임명한다. 학장의 임명신청은 후술하는 경영협의회(동법 제20조)와 교육연구평의회(동법 제21조)에서 동수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장선출회의’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장선출회의는 경영협의회나 교육연구평의회에서 선출하는 자 이외에도 학장선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나 이사를 학장선출회의의 위원에 추가시킬 수 있으나, 그 인원은 전체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장선출회의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학장의 임기는 2년 이상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장선출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이 정한다. 이사의 임기는 6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장이 정하며(다만 학장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나) 임원의 해임

문부과학성장관 또는 학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여한 임원이 ① 동법 제 16조의 결격사유¹⁴⁾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17조 제1항), ②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동법 동조 제2항), ③ 임원(감사는 제외)의 직무집행이 적당하지 않아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업무 실적이 악화되어 그 임원에게 계속해서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동법 동조 제3항)에는 자신이 임명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와 ③의 사유로 인한 문부과학성장관의 해임은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학장선출회의의 제청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하며(동법 동조 제4항), 학장이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부과학성장관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5항).

다) 학장의 업무

학장은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학장은 학교교육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학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법 제11조).

- ①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
- ② 문부과학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중기계획 등)
- ③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 ④ 중요한 조직의 설치와 폐지
- ⑤ 기타 임원회가 정한 중요 사항

라) 임원 및 직원의 지위와 비밀유지의무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보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14)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비상근은 제외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으나(동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비상근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다(동법 동조 제2항).

중이나 퇴임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된다(동법 제18조 및 제19조).

2) 경영협의회 등

국립대학법인에는 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협의회'가,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평의회'가 설치되고 있다.

가) 경영협의회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협의회를 두는데, 이는 ① 학장, ② 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직원, ③ 교육연구평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여 학장이 임명하는 교외 인사(학외위원)로 구성되며, 학외위원이 전체 경영협의회 위원 $\frac{1}{2}$ 이상이 되어야 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경영협의회 의장은 학장으로 대신하며, 의장은 경영협의회를 주재한다.

경영협의회는 ①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 중에서 경영에 관한 사항, ② 회계규정, 임원 보수기준, 직원 급여기준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규칙의 제정과 개폐, ③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 ④ 경영 분야의 자기 평가, ⑤ 기타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동법 제20조 제4항).

나) 교육연구평의회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교육연구평의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평의회는 ① 학장, ② 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③ 학부장, 연구과장, 부설연구소장 기타 중요한 교육연구조직의 장으로서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④ 기타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임명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동법 제21조 제1·2항).

교육연구평의회 의장은 학장이 담당하며, 의장은 동 평의회를 주재한다(동법 제21조 제4·5항).

평의회는 ①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사항(경영에 관한 사항 제외.),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대한 사항(경영에 관한 사항 제외.), 학칙

제 3 장 국립대학법인화 관련법의 내용

(경영에 관한 사항 제외) 기타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편성의 방침에 관한 사항, 학생의 원활한 수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의 입학, 졸업, 수료, 재적, 학위수여 등의 방침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 분야의 자체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을 심의한다(동법 제3항).

3) 국립대학법인의 업무 등

국립대학법인은 ① 국립대학의 설치 및 운영, ② 학생을 위한 수학(修學), 진로선택 및 心身의 건강 등에 관한 상담 기타 원조, ③ 위탁 및 공동연구의 실시 및 기타 당해 국립대학법인 이외의 자와 연대한 교육연구 활동 추진, ④ 공개강좌의 개설 기타 학생이 아닌 자를 위한 학습 기회 제공, ⑤ 당해 국립대학의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활용의 촉진, ⑥ 당해 국립대학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것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출자, 그리고 ⑦ 위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한다(동법 제22조).

(2)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제24조 내지 제29조에서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편제 형식과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법인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립대학법인에 관한 제12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명칭에서 학장대신 ‘기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립대학법인은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으로, 학장선출회의는 ‘기구장선출회의’로, 대학은 ‘대학공동이용기관’ 등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에도 경영협의회(제27조)와 교육연구평의회(제28조)를 두며, 이들 협의회와 평의회의 구성과 역할도 동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립대학법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은 ①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설치 및 운영, ②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이 행하는 연

구와 동일한 연구에 종사하는 대학의 교원 기타의 자에게 이용 제공, ③ 대학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 교육 기타 그 대학 교육에의 협력, ④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활용의 촉진, ⑤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 기타 정령(政令)에 정해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출자, 그리고 ⑥ 위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동법 제20조)

3.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등

법인법은 「제3장 중기목표 등」에서는 2개 조항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칙법의 규정을 대폭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5조).

국립대학법인은 문부과학성장관에게 중기목표(6년)의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또한 연도계획을 제출·공표하여야 한다. 문부과학장관은 법인의 의견을 배려하면서 각 대학의 중기목표를 책정·공표함과 동시에 중기계획을 인가·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실적 평가 등에 대하여 제9조의 문부과학성의 평가위원회, 후술하는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총무성의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이하 “총무성평가위원회”라고 한다.)가 관계한다.

(1) 중기목표

문부과학장관은 국립대학법인 등이 달성하여야 할 업무운영에 관한 6년 기한의 중기목표를 정하여 국립대학법인에 제시함과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를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할 경우 미리 국립대학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해 의견을 배려함과 함께 제9조의 평가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또한 재무장관과도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36조 제3호).

중기목표에는 ①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업무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③ 재무내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교육 및 연구와 조직 및 운영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와 당해 상황에 관련

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30조 제2항).

(2) 중기계획

국립대학법인과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은 문부과학성장관이 중기목표를 제시하면 문부과학성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기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동법 제31조 제1항). 문부과학장관이 계획을 인가할 때는 미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문부과학장관은 인가한 중기계획의 적정하고 정확한 실시가 부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학법인 등은 인가를 받은 중기계획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5항). 중기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와 계획의 변경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법인의 임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40조 제1호 및 제6호).

중기계획에는 ①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관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② 업무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③ 예산(인건비의 견적 포함), 수지계획 및 자금계획, ④ 단기차입금의 한도액, ⑤ 중요한 재산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에 관한 계획, ⑥ 잉여금의 용도, 그리고 ⑦ 기타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동법 제31조 제1항).

(3) 연도계획 및 중기목표와 중기목표기간종료시의 평가 및 검토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법의 준용규정(제35조)에 의하여 통칙법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이 대폭 준용된다.

준용되는 통칙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은 매년도 '연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문부과학성장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에 의한 통칙법 제31조 제1항 준용). 각 사업연도와 중기목표기간중의 업무의 실적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의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고, 평가는 해당 국립대학 등과 총무성 평가위원회에 통지됨과 동시에 공표된다. 이 때 문부과학성의 평가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에 대해 「권고」를, 총무성 평가위원회는 문부과학성의 평가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동법 제35조 및 통칙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통칙법 제32조 제3항 내지 제5항 준용).

중기목표기간(6년간)의 종료시에는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국립대학법인의 사업개폐를 포함한 검토가 실시된다. 즉, 국립대학법인은 중기목표기간 만료시에 이 기간의 업무실시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공표하고(동법 제35조에 의한 통칙법 제33조 준용),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중기목표의 달성상황을 포함한 종합적 결정이 된다(동법 제 35조에 의한 통칙법 제34조 준용). 문부과학성장관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의 「업무를 계속시킬 필요성, 조직의 구조, 기타 그 조직 및 업무의 전반에 걸친 검토」(동법 제 35조에 의한 통칙법 제35조 제1항 준용)를 행한다. 즉, 국립대학법인법의 존속, 개폐까지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총무성 평가위원회도 문부과학부장관에 대해 「사업의 개폐」에 관해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동법 제35조에 의한 통칙법 제35조 제3항 준용).

4. 재무 및 회계

국립대학법인은 재무 및 회계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법의 관계규정이 외에 준용규정(동법 제35조)에 의하여 통칙법의 제4장(재무 및 회계) 조항 전체가 준용된다.

(1) 적립금의 처분

중기계획의 종료시에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국립대학법인 등은 문부과학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차기 중기계획의 업무를 위한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문부과학장관은 승인에 앞서 미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등은 이때 적립금액에서 재원충당인정금액을 차기에 이월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

다(국립대학법인법 제32조).

(2) 장기차입금 및 채권발행

국립대학법인 등은 토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나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또는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의 명칭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법 제33조).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립대학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 장기차입금 및 채권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에도 문부과학장관은 미리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5. 기 타

통칙법 제3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1조 내지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61조 및 제63조 내지 제66조 규정은 국립대학법인등에 대하여 준용한다(국립대학법인법 제35조).

제 2 절 국립대학법인화 관련 부수 법의 주요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회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하여 국립대학법인법 이외에도 고등전문학교기구, 대학평가와 학위수여기구, 재무경영센터, 미디어교육개발센터 등의 설립·운영의 근거법, 그리고 법인화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련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을 통과시켰다. 아래에서는 이들 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한다.

1. 독립행정법인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의 개요¹⁵⁾

1) 국립대학의 법인화와 함께 국립고등전문학교를 독립 법인화하기 위

15)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国立高等専門学校機構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6.htm 및 [03052707.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7.htm))(2005.10.19.방문).

하여, 그 설치·운영의 근거 법규를 국립학교설치법에서 독립행정법인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이하 “기구법”이라 한다.)으로 대체하려는 입법이다. 독립행정법인국립전문학교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직업에 필요한 실천적이면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는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함과 함께 고등교육의 수준 향상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기구법 제3조), 55개 국립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며, 설치되는 이들 고등전문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은 기구법으로 정한다(기구법 제3조, 제12조 및 부칙 별표).

2) 기구 및 개별 전문학교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기구에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회를 두며, 임원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통칙법(제19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기구법 제5·6·7조).

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의 기간 및 중기목표를 정하여 기구에 제시하며, 기구는 중기목표에 따라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중기목표, 중기계획, 연도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통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기계획을 종료할 때 적립금이 있으면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 차기 사업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문부과학성의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재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기구법 제13조).

2.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의 개요¹⁶⁾

1)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이하 “기구법”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수반하여 국립학교설치법상의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를 ‘기구법’에 근거하는 독립행정법인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대학 등(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대학 및 고등전

16)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8.htm 및 [03052709.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9.htm))(2005.10.19.방문).

문학교 및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기관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함과 함께, 학교교육법 제6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수여를 수행하는 것에 의하여,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다양한 학습의 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구법 제3조).

2) 기구의 임원회는 기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임원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은 통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부과학장관은 미리 '평의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기구장을 임명한다.

3) 기구에는 기구장의 자문에 응하여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평(評)위원회를 두며, 평의원은 대학 등에 관하여 폭넓은 식견을 가진 자, 기타 기구업무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20명이내에서 기구장이 임명한다(기구법 제14조 및 제15조).

4) 기구는 ① 대학 등의 교육·연구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학 등의 교육연구 활동 등의 상황에 관하여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해당 대학 등 및 그 설치자에게 제공 및 공표하는 것, ② 학교교육법 제6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것, ③ 대학등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학위수여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성과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것, ④ 대학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대학의 각종 학습기회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을 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기구는 국립대학법인법상의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가 ①의 평가실시요청을 한 경우는 지체없이 평가를 행하고 평가결과를 평가위원회 및 평가의 대상인 국립대학 또는 대학공동이용기관에 제공 및 공표한다(기구법 제16조).

5) 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의 기간 및 중기목표를 정하여 기구에 제시하고, 기구는 중기목표에 따라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중기목표, 중기계획, 연도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통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기계획 종료시 적립금은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 차기로 이월할 수 있다(기구법 제17조).

3.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의 개요¹⁷⁾

1)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이하 “센터법”이라 한다.)은 국립대학 법인화에 수반하여 기존의 국립학교설치법상의 ‘국립학교재무센터’를 ‘센터법’에 근거하는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및 독립행정법인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의 시설의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 및 교부 및 국립대학법인 등의 재무 및 경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 직원의 연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 등의 교육연구 환경의 정비 충실 및 재무·경영의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출자하는 예산으로 운영한다(센터법 제3조 및 제5조).

2) 센터는 3년 임기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의 이사, 2인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것은 통칙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센터법 제6조 내지 제8조). 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문부과학장관은 국립대학 등에 관하여 식견이 높은 자 그 밖의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한다(센터법 제9조). 통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자는 비상근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다(센터법 제10조 제1항)

3) 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의 기간과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센터에 제시하며, 센터는 중기목표에 따라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중기목표, 중기계획, 연도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은 통칙법의 규정에 따른다.

4) 센터는 ① 국립대학법인 등의 재산의 적절하고 유효한 활용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등에 협력 및 전문적·기술적 조언을 행하는 것, ② 국립대학법인 등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그리고 설

17)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国立大学財務・経営センター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0.htm 및 [030527011.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1.htm))(2005.10.19. 방문).

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 및 교부를 행하는 것, ③ 국립대학법인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으로 특정대학법인등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의 인수 및 당해 기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것, ④ 고등교육에 관한 재정 및 대학법인 등의 재무·경영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것, ⑤ 국립대학법인 등의 재무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하여 그 직원의 연수, 정보제공 그밖의 업무를 행하는 것, ⑥ 앞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센터법 제13조).

5) 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의 기간 및 중기목표를 정하여 센터에 제시하고, 센터는 중기목표에 따라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중기목표, 중기계획, 연도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통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기계획 종료시 적립금은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 차기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센터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4. 독립행정법인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의 개요¹⁸⁾

1) ‘독립행정법인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이하 “센터법”이라 한다.)은 국립대학 법인화와 병행하여, 기존의 국립학교설치법에 따른 ‘미디어교육개발센터’를 ‘센터법’에 근거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 ‘독립행정법인 미디어교육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2인의 이사, 2인의 감사를 두며, 임원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통칙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른 센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의 기간과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센터에 제시하고, 센터는 이 중기목표에 따라 중기계획을 작성,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중기목표, 중기계획, 연도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은 통칙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メディア教育開発センター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2.htm 및 [030527013.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3.htm))(2005.10.19. 방문).

3) 센터의 주요 업무는 e-Learning을 추진하는 것인데, 대학 등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고도로 이용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의 연구와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및 활용의 촉진과 대학 등의 교육에 협력하는 것이다.

5. 국립대학법인법등의시행에의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 법률의 개요¹⁹⁾

1) 이 법은 국립학교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국립대학 등을 법인화하는 앞의 5개 법률, 즉, ‘국립대학법인법’(2003년 법률 제112호),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법’(2003년 법률 제113호),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2003년 법률 제114호),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2003년 법률 제115호) 및 ‘독립행정법인 미디어교육개발센터법’(2003년 법률 제116호)의 시행에 따르는 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다.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국립대학법인 등의 성립일인 2004년 4월 1일이다.

2) 전체적으로 2개 법률이 폐지되고, 53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있다. 관계법률의 정비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국립학교설치법(1949년 법률 제150호) 및 국립학교특별회계법(1964년 법률 제55호)을 폐지함국립대학법인법등의시행에의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② 직원이 비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특례법과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등을 일부개정함(정비법 제6조, 제13조 등).

③ 국가회계제도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따른 국립대학관계 규정의 삭제를 위한 국유재산특별조치법, 국가의채권관리등에관한법률 등을 일부개정함(정비법 제15조, 제23조 등).

19)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国立大学法人法等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jin/030527014.htm 및 [030527015.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jin/030527015.htm))(2005.10.19. 방문).

제 3 장 국립대학법인화 관련법의 내용

- ④ 종래 국가의 의무를 국립대학법인의 의무로 하는 등의 규정 정비
를 위하여 사회교육법(사회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제공), 스포츠진흥법
(스포츠를 위한 학교시설 제공) 등을 일부 개정함(정비법 제9조, 제27조 등).
- ⑤ 기타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근거 규정을 종전의 국립학교설치법에서
국립대학법인법으로 수정함.

제 4 장 국립대학법인법의 검토

제 1 절 입법론상의 논점

1.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법인화의 제도적 취지

1) 문부과학성이 주장하는 국립대학법인제도의 취지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²⁰⁾

첫째, ‘대학별로 법인화’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 행정조직의 일부였던 각 대학에 독립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 예산과 조직 등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여 대학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민간적 발상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임원회제도의 도입으로 톱 매니지먼트를 실현하고, 경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 전체적 관점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셋째,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운영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즉, 학외임원제도(학외유식자·전문가를 임원으로 초빙)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영협의회에 학외자가 참가하고, 학장을 선출하는 학장선출회의에도 외부인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넷째, 비공무원형에 의한 탄력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즉, 능력과 업적에 따르는 급여 시스템을 각 대학의 책임으로 도입하고, 겸직 등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를 산학연대 등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하며, 학장에게 사무직을 포함한 대학 전체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섯째, 제3자 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후 체크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교육연구 실적을 독립적인 기관에 의하여 평가받게 하여 그 결과를 대학의 자원배분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재무내용, 교육연구 등의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다.

20)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国立大学法人法の概要」(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4.htm) (2005.10.19. 방문)

요컨대, 국립대학법인화는 사회화=경영협의회 등에서의 외부인사의 참여 등, 대학의 개성화=대학별 목표달성, 책임의 명확화=학장 등 집행부에 의한 Top management, 기업회계의 도입, 그리고 평가시스템에 기초한 문부과학성에 의한 통제라는 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²¹⁾

2) 국립대학법인법은 제2장 제2절에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국립대학의 경우와 같은 방법인 법인화를 통하여 재편하였다. 재편의 목적은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신규분야의 개척, 연구수행의 효율화에 의해 대학센터 전체의 신규분야창출에의 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²²⁾

첫째, 신규분야의 창출이다. 즉, 각 기구의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둘째, 기존 조직의 재점검이다. 즉, 법인화의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연구소에 대한 유연한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사무처리체제 등의 효율화이다. 즉, 공통사무의 일괄 처리 등에 의한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사무처리, 기술지원 체제의 효율화 및 강화이다.

2. 국립대학법인화 반대의 논점

일본정부의 국립대학법인화의 추진에 대하여 많은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그에 따른 법인화 반대 논리도 다양했지만, 대표적으로 2003년 3월 6일 '독립행정법인반대수도권네트워크'²³⁾사무국이 발표한 '독립대학법인법안비판'에서 법인화 반대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²⁴⁾

21) 中富公一, 国立大学法人法(案)にみる意思形成システムと学問の自由, 『人権21』, 第163号 (2003.4), 岡山人権問題研究所, 30쪽.

22)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国立大学法人法の概要』 중 大學 共同利用機關の再編について(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03052704.htm)(2005.10.19. 방문).

23) <http://www.ne.jp/asahi/tousyoku/hp/nettop.html>

- ① 설치형태와 국립대학법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가 설립한 대학에 대하여 운영과 지원을 포기하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사립대학에 비하여 오히려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대학자치의 이념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법안이 기존의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조항의 대부분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법안 제35조에 의해 통칙법 전문 41개조 부칙 22개조 중 39개조가 준용된다.). 중기목표와 중기계획 수립시 대학에 의한 의견 제출과 그것을 배려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법안 제30조 제3항),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통칙법의 시스템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립대학을 행정의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재무·회계와 임원 임면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기업적 경영’ 개념이 도입되어, 경영자립과 공적 비용 삭감 압력, 평가에 의한 통제 가능성 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 ③ 법안이 규정하는 대학의 특성과 관련하여 “교육연구의 특성을 항상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3조),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의 특성’상 통칙법과 달리 ‘대학의 자주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만, 그 자주성은 ‘대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법률이 정한 관리운영조직은 학장과 임원회의 권한의 비대화, 학외인사의 발언권 강화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자치’와 ‘교수회자치’를 파괴하고, 이는 상의하달 경영방식에 따라 산학연대, 대학의 기업화를 실현하는 메카니즘에 매몰되게 된다.
- ④ 현행 국립대학 법제와의 괴리와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는 학교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법에 따라 국립대학의 관리운영은 교수회를 비롯한 평의회에 의한 전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두고 있고, 교외 인사가 참여하는 운영자문회의의 권한은 자문에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회와 법인의 각종 기관이 분리되며, 오히려 법인의 여러 기관이 교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대

24) 김병주,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대학교육』, 통권 123호 (2003년 5·6), 68쪽.

학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수회에 남겨진 권한이 불투명해진다. 또한 ㉔ 교육공무원특례법의 개정(정비법안 제6조)에 따라 교원 신분이 비공무원화되어 신분 불안을 야기하며, ㉕나아가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동법 제10조)과 관련해서도 법안이 교육연구의 내용이 포함된 중기목표의 설정 권한을 문부과학장관에게 부여하고 대학의 중기계획을 대신이 인가해 주는 구조 등은 교육기본법의 규정과 상치되고 결과적으로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형해화시킨다.

- ⑤ 국립대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법안은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관료적 업무의 비대화를 야기하며, 외부인사 참여 확대로 '대학이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기초연구나 인문과학연구의 쇠퇴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 2 절 국립대학법인법의 구체적 검토

국립대학법인법(이하 "법인법"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는 긍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부정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인인 국립대학

법인법은 「이 법률에서 '국립대학법인'이란 '국립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법 제2조 제1항).²⁵⁾ 대학별로 법인화되기 때문에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 본 문부과학성의 설명이다. 국립대학법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를 관리하고 운영도 결정한다는 것이다.

25) 이에 대해 국립대학법인의 성격규정인 제1조와 제2조는 상이하며,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설치자이자 동시에 대학자체이며, 설치자는 동시에 대학자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설치제도이며 법인격이라고 한다. 蔵原清人, 国立大学法人法と学校設置制度, 法人格問題, 「大学と教育」, 第37号(2004.5), 東海高等教育研究所, 50-52쪽 참조.

국립대학 법인화에 있어서 학교설치자인 법인과 설치되는 국립대학으로 나누는 방식(간접방식)과 국립대학 자체를 법인으로 하는 방식(직접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내각법제국의 의견에 의하여 간접방식이 제도화되었다.

국립대학 설치자인 법인과 설치되는 국립대학으로 나누는 간접방식에 대한 반대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학'과 '경영'의 분리에 의해 법인이 대학 '경영'을 지배함으로써 경영에 의한 교학의 지배현상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설치자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책임이 경시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학교교육법은 「「학교의 설치자는 설치할 학교를 관리하고, … 학교의 경비를 부담한다」(동법 5조)고 하여, 설치자의 경비부담원칙을 정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설치자가 「국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됨에 따라, 경비부담책임을 지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법인이고 국가는 2차적으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간접방식입법에 의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그 대신에 대학의 자조노력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삭감되면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의 질을 희생하든지 혹은 학생수업료의 인상에 의해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지금의 높은 수업료가 더 인상된다면,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원칙이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²⁶⁾

2. 국립대학법인과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법인법 성립 이전에는 「독법화」로 불렸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기초는 행재정개혁에 있어서 행정조직의 독립행정법인화 정책이나 통칙법의 성립에서 구할 수 있다.²⁷⁾

국립대학의 존재형식에 대하여 통칙법에 의한 독립행정법인화 방안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었다.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은 대학을 독립행정

26) 田端博邦, "驚くべき国立大学法人法の内容 - 法案の分析", 「国立大学はどうなる - 国立大学法人法を徹底批判する」, 東京大学職員組合・独立行政法人反対首都圏ネットワーク(編), 花伝社(共栄書房), 2003.5. 7-8쪽.

27) 앞글, 8쪽.

법인으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지만, 대학측은 독법화에는 강한 반발을 보였다. 국립대학협회는 당초 「독법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후 「통칙법 대로의 법인화에는 반대」로 수위를 낮추었다.²⁸⁾ 현재는 국립대학이 국립대학법인법에 의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독립행정법인과는 어떠한 점이 다르며, 과연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1) 독립행정법인

1) 「법인」이란 인 또는 재산으로 성립되는 조직체에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으로, 이사, 기타 기관을 가지고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직체이다. 독립행정법인제도는 국가기관의 단순업무효율화를 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새로운 공법인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기에 앞서 중앙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독립법인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국가의 기능 중 기획기능은 기존의 행정기관에서 직접 담당하고, 집행(실시)기능은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된 독립법인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독립행정법인제도는 집행적이고 사업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에 대하여 조직, 인사, 재무 등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중앙정부단위에서 86개 사무·사업을 대상으로 독립행정법인제(89개의 독립행정법인)를 채택하고 있다. 통칙법에 따르면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적 관점에서 실시가 확보될 필요가 있는 사무 및 사업으로, 국가의 주도하에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실시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무, 그리고 하나의 주체아래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독립행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⁹⁾

28) 앞글, 8-9쪽.

(2) 독립행정법인화에 대한 우려

현행법상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인이지만, 법제화되기 이전 단계의 논의에서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방안에 대하여 많은 대학관계자가 반대를 하였다. 독립화에 대한 반대이유를 살펴본다.

반대이유는 독립행정법인이 원리적으로는 매우 강한 관료통제 아래에 놓여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즉, 독립행정법인은 행정 중 「기획입법안기능」과 분리된 「실시기능」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조직에 대해 감독관청의 강한 지배권이 미치는 제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인의 장은 문부과학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또한 업적의 악화 등이 있는 경우는 장관이 법인의 장을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장관이 「중기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실시하기 위한 「중기계획」은 법인이 만드는 것으로, 그것도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장관이 임명하는 감사가 일상적인 업무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독립행정법인이 감독관청의 강한 감시와 규제하에 놓여있는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칙법의 독립행정법인제도가 대학에 적용된다면, 「대학의 자치」가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³⁰⁾

(3) 현행법상의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의 실체

국립대학법인은 일반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통칙법에 근거한 독립행정법인과는 달리 국립대학법인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국립대학법인법은 ‘국립대학법인’을 ‘국립대학의 설치를 목적으로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입법적 정의를 내리면서(법인법 제2조 제1항), ‘통칙법’이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³¹⁾

29)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

30) 田端博邦, 9쪽.

그러나 이러한 국립대학법인법상의 '법인'의 실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 바, 다음과 같다.

법인법은 통칙법의 많은 규정이 「준용」되도록 되어있는 점이다(법인법 제35조). 통칙법과 법인법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수정을 포함하여 통칙법이 거의 전면적으로 국립대학법인에 적용되고 있다. 학장선거의 절차와 중기목표에 관한 규정 등을 제외하면, 통칙법 그 자체가 완전히 관철되고 있고, 문부과학성장관이 임명하는 감사제도는 법인법에도 재등장한다. 즉, 통칙법과는 독립된 법률을 만들었지만, 그 내실은 통칙법의 내용을 거의 완전히 포섭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인」을 「독립행정법인」 또는 「독립행정법인의 하나」로 불러도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국립대학법인법은 국립대학을 독립행정법인처럼 「행정의 실시기능 담당기관」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다.³²⁾

3. 중기목표 · 중기계획 및 평가

(1) 중기목표 · 계획 책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각 대학은 문부과학장관에 대하여 중기목표(6년)의 의견을 제출하고 중기계획을 작성하며, 또한 연도계획을 제출 · 공표하여야 한다. 문부과학장관은 법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각 대학의 중기목표를 책정 · 공표함과 동시에 중기계획을 인가 ·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은 미리 문부과학성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중기계획에는 중기목표의 사항 이외에 재무에 관해서는 예산, 수지계획 · 자금계획, 단기차입금의 한도액, 잉여금

31)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법인은 독립행정법인통칙법에 근거한 독립행정법인과는 다음의 점에서 다르다고 한다. 즉, ① 학외임원제도 등의 학교외부인사의 운영참가를 제도화하고, ②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독자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③ 학장선출과 중기목표설정에서 대학의 특성과 자주성을 고려하고 있는 점이다.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国立大学法人法の概要」(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4.htm) (2005.10.19. 방문).

32) 田端博邦, 9쪽.

의 용도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이들 사항을 대학이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문부과학성은 「예산, 조직 등의 규제는 대폭 감소시키고, 대학의 책임으로 결정」 = 「자율적 운영」이라고 하고 있다(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國立大學等の法人化について - 國立大學法人法の概要」 참조). 그러나 계획은 「인가」라는 감시하에 있을 뿐 아니라, 문부과학장관은 중기계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법인법 제31조 제4항), 중기목표·중기계획 제도 전체를 통하여 강한 국가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³³⁾

(2) 이중평가와 연구의 편향

1) 평가위원회의 위치와 권한

대학법인은 6년의 중기계획 종료시에 2개의 기관에 의해 「업적」을 「평가」받는다. 문부과학성의 직속기관인 평가위원회와 총무성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가 그것이다. 이들 기관의 평가에 따라 문부과학성장관은 ①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법인의 업무계속의 필요성과 조직의 본질 등 조직 및 업무전반에 걸친 검토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거나, ② 사업 개폐에 관한 총무성 평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³⁴⁾ 국립대학법인은 손쉽게 「개폐」 조치도 받을 수 있다.

법인법에는 문부과학성의 평가위원회 구성원을 정령³⁵⁾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20인 이내로 문부과학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동정령 제1조 및 제2조), 구성 멤버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이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총무성의 평가위원회의 위원도 총무성장관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³⁶⁾ 국가 관여하의 위원회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 평가기관은 대학에서의 교육·연구의 내용이 정책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 대학 개선을 위

33) 田端博邦, 20-21쪽.

34) 국립대학법인법 제35조에 의한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35조 제3항 준용.

35)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령(2003. 9. 25 정령 제441호)

36)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령(제정 2000. 6. 7. 정령 제270호, 최종개정: 2004. 6. 2. 정령 제185호) 제2조.

한 전제를 조정하는 국가의 지속적인 검열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2) 대학간·분야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시스템

목표의 달성도에 따라 다음 6년간의 운영비교부금이 좌우되기 때문에, 연구비를 획득하기 쉬운 연구, 학생의 모집이 쉬운 교육등 정부로부터 평가받기 쉬운 중기목표나 중기계획이 세워지게 되고, 「평가」받기 힘든 기초적인 교육·연구분야는 경시되게 될 우려가 있다.⁽³⁾ 따라서 외부로부터 연구비획득과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 예상되는 지방의 법인과 소규모 법인은 운영이 어려워짐으로써 교육연구조건에 있어서 대도시주변의 대학과의 격차가 한층 확대될 우려가 있다.³⁸⁾

4. 임원의 임면

(1) 학장선출회의

국립대학법인법이 통칙법과 다른 한 가지는 학장의 임면에 대해 대학법인의 「제청」을 필요로 한다(법인법 제12조 및 제17조)고 되어 있는 점이다. 즉, 문부과학장관은 학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지만, 대학법인내에 설치된 「학장선출회의」라는 회의체의 제청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점에서 「학장선출회의」가 「대학 자치」의 방과제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⁹⁾

그러나 이 「학장선출회의」가 과연 진정한 방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한다. 동법에 의하면, 학장선출회의는 「경영협의회」의 의원과 「교육연구평의회」의 위원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학장이나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이러한 학장을 선출하는 회의에 현직 학장이나 학장이 임명하는 이사가 참가할 수 있는 제도는, 우선 학장선출에

37) 田中真介, 65쪽.

38)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7쪽.

39) 田端博邦, 10-11쪽.

있어서 문부과학부장관이 임명한 현학장의 영향력이 부당하게 확대될 소지가 많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⁴⁰⁾

또한 학장은 스스로 자신을 선택하여 무기한으로 재임할 수 있게 되며, 학장의 대학운영 실책을 지적하여 수정하거나 해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도 있다.⁴¹⁾

학장선출회의의 의견은 확실히 대학법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래 대학구성원의 의견이라는 의미에서의 대학 의견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연구의 현장에 종사하는 대학 구성원의 「학문의 자유」야 말로 「대학 자치」의 기초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러한 회의체에 의한 「제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학 자치」의 방과제가 될 지는 의문이다.⁴²⁾

(2) 임원의 해임사유

i) 학장해임사유에 통칙법의 규정(통칙법 제23조 제3항)과 동일 규정인 「업무의 실적이 악화된 경우」(법인법 제17조 제3항)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업무효율이나 재무 등의 실적 악화라는 비학문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압력의 구실이 될 수 있고, 또한 역으로 학장을 경영효율 중시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장선출회의나 장관에 의한 학장해임 규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위협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한 대학지배에의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⁴³⁾

ii) 이사의 경우에 학장의 해임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학장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는 문부과학성장관이 임명하지만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와 직무상의 무위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령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불가하다(법인법 제17조

40) 앞글, 11쪽;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9쪽.

41) 田中真介, 65쪽.

42) 田端博邦, 11쪽.

43) 앞글, 11쪽.

제3항).⁴⁴⁾ 따라서 감사가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부과학성장관이 해임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해임권행사에 있어서 감사의 중립적 지위를 감안하여 총무성평가위원회와 같은 제3기관의 의결에 거치도록 하는 입법론이 제기된다.⁴⁵⁾

5. 내부조직

(1) 학외자(외부인사)에 의한 법인운영에의 영향

법인법에 의해 「임원회」와 「경영협의회」라는 새로운 조직이 설치되며, 대학운영의 중요사항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심의, 결정한다.

i) 경영협의회는 학장, 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직원, 학외유식자(전체의 1/2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경영협의회에서는 학장이 의장이 되기 때문에 학외자가 과반수를 넘어, 모든 의사를 학외자의 의견대로 의결할 수 있게 된다.⁴⁶⁾

ii) 임원회는 학장 1·이사(2~8)·감사 2로 (구성)되고, 감사는 문부과학성장관이 임명하며, 이사·감사에는 학외자를 포함시켜야만 한다. 이사는 대학에 따라서 명수에 편차가 크지만, 그 근거가 불명하다. 이사수는 문부과학성 관료의 퇴직자수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대학개혁이 진짜 목적이 아닌, 관료의 재취직처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⁴⁷⁾ 임원회 학외이사의 경우 자금확보와 문부과학성장관에 의한 인가 등을 원활하게 행하는 등의 관점에서 산업계와 퇴직공무원이 상당수 임명되는 것이 예상되고 이 경우 기초적인 교육연구의 충실보다도 경제적인 투자효율과 정부의 정책구현화 등을 우선하는 법인운영의 측면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⁴⁸⁾

44) 대학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자치가 인정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 관하여는 국립대학법인의 감사에 상당하는 감사위원에 대해 그 이유의 유무 및 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이 해직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일본 지방자치법(1947년 4월 17일 법률 제67호, 최종개정 : 2005년 11월 7일 법률 제123호) 제86조 제1항).

45)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10쪽.

46) 田中眞介, 64-65쪽.

47) 앞글, 64쪽.

48)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10쪽.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학외이사 임명에 대해서는 그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임원의 결격조항(법인법 제16조)에 추가하는 입법론이 제기된다.⁴⁹⁾

(2) 교수회의 권한 축소

법인법에서는 경영협의회 및 교육연구평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그러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0조 및 제21조). 한편 학교교육법에서는 「대학에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설치해야만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동법 제59조 제1항), 교수회와 경영협의회 및 교육연구평의회와의 관계가 법인법에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아 교수회에 관한 규정조차 법인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⁵⁰⁾

종래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그리고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평의회는 「교육연구평의회」로 명칭을 바꾸었고, 교육·연구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의 심의기관으로 축소되었다(제21조 제3항 제4호). 그것도 최종결정권은 없다. 더욱이 교육·연구를 좌우하는 예산이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할 수 없다.⁵¹⁾

대학법인은 문부과학성이 임명한 학장, 학외자를 다수 참여시킨 임원회와 경영협의회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교육·연구에 관한 중기목표·중기계획의 내용까지 통제하게 되었다. 학문의 자유의 제도적 보장인 교수

49) 퇴직공무원의 국립대학법인임원임명의 결격사유를 두어야 하는 이유로 ① 국립대학은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의 자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의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필요가 있으며, 대학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초기에도 여전히 이 점은 중시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인의 임원에 퇴직공무원이 취임하는 것은 다른 독립행정법인 이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② 이사 혹은 감사의 임용에 있어서 정부직원의 취임을 제한한 선례로는 일본우정공사법이 있는데(동법 제12조 제4항), 법인법에서 이사 혹은 감사의 임용의 경우 퇴직공무원의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은 일본우정공사법에 비추어 볼 때 크게 후퇴한 것이다. ③ 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인법의 취지가 「자율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국립대학을 보다 활성화」하는 점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립대학법인이 이후 독립한 법인으로서 운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중이 커져있는 퇴직공무원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법인 임원의 능력의 향상과 직무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앞글, 10-11쪽).

50) 앞글, 11-12쪽.

51) 田中真介, 65쪽.

회의 권한축소는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⁵²⁾

또한 교육연구가 주된 업무인 대학법인의 경영에 있어서는 경영협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있는 예산의 작성과 조직의 평가 등에 관하여도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협회와 교육연구평의회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에 교육연구의 충실을 우선시하는 경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⁵³⁾

6. 직 원

(1) 신 분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관한 검토 중에 직원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선행된 많은 독립행정법인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신분으로 할 것인가,⁵⁴⁾ 그렇지 않으면 비국가공무원으로 할 것인가, 혹은 양자의 혼합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다. 이유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중에 비국가공무원형이 선택되었다.⁵⁵⁾

국립대학법인법에 의해 국립대학의 직원은 고용은 계속되나 공무원신분은 상실되어 「비공무원화」하게 되었다. 비공무원화에 의해 국립대학 직원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노동법 세계로 신분상의 법률관계가 전환되게 되었다.⁵⁶⁾

1) 비공무원화의 이유 불명확

i)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신분을 비공무원화한 데 대하여 법률상 명백한

52) 앞글, 65쪽;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12쪽.

53) 앞글, 12쪽.

54) 직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인 것을 특정독립행정법인이라고 한다(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2항).

55) 和田 肇, “国立大学法人化と新たな労使関係,” 国立大学法人化の衝突と私大の挑戦, エイデル研究所, 2005.2, 138쪽;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의한 신분관계변화의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조상균, 국립대학법인화와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법학」, 제20호(2005.6), 한국노동법학회, 203~210쪽 참조

56) 국립대학법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野田進 外, 国立大学法人の労働関係ハンドブック, 商事法務, 2004, 참조.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공무원화의 첫째의 이유는, 국립대학법인의 업무의 합리화·효율화를 진행하거나 중기목표기간종료시에 국립대학을 재편하기 위해서, 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은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산학연계를 위해 임기제고용과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를 진행시키기에 좋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공무원화에 의해 민간기업처럼 유연한 인사관리가 행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로, 교원에 관한 교육공무원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서비스차원에서 본다면 비공무원화의 메리트가 크다. 이것이 비공무원화의 이유일 것이라고 한다.⁵⁷⁾

직원 신분의 국무공무원여부는 직원의 직무의 내용 등에 상응하여 정하여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겸업완화 등 그 직무의 특수성이 고려되면 족한 것으로, 공무원인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굳이 비국가공무원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합리적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⁵⁸⁾

ii) 또한 2003년 7월 25일에 한 의원이 제출한 질문서를 통하여 「현재의 국립대학의 교직원의 의향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적 변경을 감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부답변서에는 「국립대학의 설치형태 변경에 따라 개개의 직원의 의향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인 국립대학의 직원이 비공무원인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으로 법률상 신분이 바뀐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직원의 신분에 관한 변동에 대해 당해 규정(국립대학법인법 부칙 제4조)에 의해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⁵⁹⁾

이러한 답변에 의하면 법인법에 근거한 국립대학의 직원의 「신분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한 효과이며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혀 고려하

57) 田端博邦, 27쪽.; 遠山장관은 ① 인사나 급여에 있어서의 능력주의, ② 임기제·공모제, 그리고 ③ 민간기업을 포함한 겸직·겸업의 대폭적 강화를 비공무원화의 메리트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사기업 경영의 발상으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다면, 특히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할 학문은 쇠퇴할 것이 명백하다(田中真介, 63쪽).

58)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13쪽.

59) 앞글, 13쪽.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불이익처분의 구제조치는 전혀 대상외가 된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한다고 하는 커다란 신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입장에서 어떠한 구제책을 구할 방도도 없다는 것은 직원에 대한 현저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생긴다.⁶⁰⁾

2) 실질적 총정원제의 존재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정원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의 직원은 비공무원화에 의해 채용이 자유롭게 되어 총정원법의 틀에서 자유로운 낙관론도 일부에 있다(이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립대학 법인화에 있어서 하나의 주안점이다). 그러나, 이론상의 정원관리라는 발상은 없어졌지만, 운영비교부금 중 급여의 기초가 되는 인건비부분은 종래의 정원수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총정원의 틀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정원외 직원고용은 과학연구비, 위임경리금, 특허수입 등에 의하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직원고용이 보다 용이해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⁶¹⁾ 앞으로도 많은 비상근 직원과 파트타임, 파견 등의 불안정한 고용은 계속 증가해 갈 것이다.⁶²⁾

(2) 교육공무원특례법의 적용제외

국립대학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의 적용⁶³⁾이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비법 제6조

60) 앞글, 13쪽.

61) 和田 肇, 140-141쪽.

62) 田端博邦, 27쪽.

63) 특례법은, 대학교원의 신분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담보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교육이 부당한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한 정신(교육기본법 제10조)을 구체화하는 정책의 하나이다. 교원의 채용·승진은 교수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행해지며(특례법 제4조), 轉任과 降任, 면직에 대해서는 평의회에서의 엄격한 심사절차가 규정되고 있다(동 제5조 및 제6조). 요컨대, 대학교원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일반공무원과 같이 임명권자의 의사에 의해 임용·면직 등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회와 평의회라는 교원중간의 자치적인 조직에 그 결정이 맡겨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의 규정은 대학의 자

에 의한 특례법 개정으로 「국립학교」, 「국가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모두 삭제되었다(나아가, 정비법 제2조는 국립학교설치법을 전면폐지하고 있다.). 개정 특례법 제2조의 「교육공무원」의 정의는 「지방공무원 중 학교교육법.....에서 정하는 공립학교의 학장, 교장, 교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인 학교교육법상의 공립학교의 학장, 교원만이 특례법상의 「교육공무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공립대학이 법인화되고 비공무원형인 경우에는 공립대학의 교원에 게도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⁶⁴⁾. 요컨대, 특례법은 지방공무원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되고 대학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능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법인법은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연구평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3항 제4호). 이 규정이 특례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 교원인사에 관한 학내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방과제를 만들 수 있겠지만, 특례법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⁶⁵⁾(8)

그리고 법인격을 가지게 되었다 해도 국립대학이 주로 국비로 운영되는 대학임에는 변함이 없고 사회에 대하여 공공적인 사명을 가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변함없다. 또한 법인법에 있어서도 법인직원의 직무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에서 형법 및 그 외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소위 「의제공무원」으로서의 취급이 규정되어 있는(제19조) 점에서도 이는 명백하다.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되는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교원의 신분의 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에 있어서도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론이 제기된다.⁶⁶⁾

치를 지탱하는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앞글, 28쪽.).

64)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특례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공단체가 공립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특례법이 적용된다(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14쪽.).

65) 田端博邦, 29쪽.

66)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14쪽.

7. 재무 및 회계

- 「기업회계」와 통제

재무·회계에 관한 통칙법의 규정은 모두 국립대학법인에 준용되고 있다(법인법 제35조). 「기업회계원칙」(통칙법 제37조 준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통칙법 제38조 준용),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통칙법 제39조 준용). 따라서 손실이월이나 이익적립 등을 가능하게 하여 單연도주의의 경직적인 예산제도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화에 의한 대학의 「자율성」의 최대 주안점으로 말해져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국립대학법인의 재무운영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촘촘한 관료 규제가 둘러쳐져 있고, 재무성의 감시도 미친다(재무장관과의 협의, 법인법 제36조).⁶⁷⁾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납부금(수업료·입학료 등)이나 부속병원수입등의 자기수입 외에 수탁연구 등의 사업수입이나 기부금 등에 덧붙여 국가로부터의 운영비교부금등에 의해 마련된다.⁶⁸⁾

(1) 운영비교부금

통칙법 제4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전문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 교부금의 금액은 매우 불확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국립학교특별회계법이 폐지되고(정비법 제2조), 또한 평가결과를 자원배분에 반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교부금의 수준이 불안정하여 예산배분에 문부과학장관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운영비교부금의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이른바 경쟁적 경비배분으로 중점이 이동되면, 국립대학법인은 기초적인 교육연구의 비중을 낮추거나, 운영비교부금 이외의 자기수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⁶⁹⁾

67) 田端博邦, 22-23쪽.

68) 清水一彦, “国立大学法人의 構造와 特質”, 国立大学法人化의 衝突と私大의 挑戰, エイデル 研究所, 2005.2, 60쪽.

(2) 적립금, 잉여금 - 수익에의 인센티브

i) 통칙법의 준용규정을 보면 연도말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먼저 이월한 손실(있는 경우)을 전보하고, 계속해서 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44조 제1항). 적립금 중 주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받은 중기계획에서 열거하고 있는 「잉여금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때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중기계획 자체가 「인가」를 요하는 것이라는 점은 국립대학법인의 재무적 자율성은 주도면밀한 후견적 관료적 규제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⁷⁰⁾

ii) 법인법이 새로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기목표기간의 최후 연도에 「적립금」이 있는 경우이다. 동법은 이 적립금 중 문부과학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을 다음 중기목표기간의 업무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동법 제32조 제1항), 장관의 승인이 없는 잔여는 국고로 환수된다(동법 제32조 제3항).

즉, 국립대학법인이 경영의 효율화와 자기수입의 확대를 통해 「이익」을 높이는 것, 이를 위한 인센티브가 바로 이런 적립금과 잉여금 시스템이다. 이는 서서히 국고의 지출을 삭감하고, 국립대학법인 독자의 수익을 위한 활동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인도할 것이다.⁷¹⁾

(3) 장기차입과 채권발행 - 대학경영의 기업화

법인법은 문부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이 장기 차입이나 채권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3조). 통칙법에서는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법은 통칙법의 일반 준칙 이상으로 “기업화” 방향으로 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수익을 올려야만 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적 재무가 대학이라는 조직에 적합한 것인가

69) 田端博邦, 24쪽.

70) 앞글, 24쪽.

71) 앞글, 25쪽.

라는 근본문제가 존재한다.⁷²⁾

게다가 채권발행이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위탁되게 되면(법인법 제33조 제6항 및 제7항), 「채권관리회사」로서의 은행·신탁회사의 대학경영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될 것이다.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라는 관료통제하의 대학의 「기업화」라는 기묘한 사태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⁷³⁾

대학 「경영」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논리에 의해 지배되게 되면, 대학의 기초과학연구나 인문과학의 쇠퇴를 초래하여 대학이 대학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⁷⁴⁾

8. 재점검 조항의 필요성

법인법이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국립대학법인제도가 「독립행정법인제도를 활용」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왜 제도설계에 있어 독립행정법인제도의 구조를 활용해야만 했는가에 대해 국회 심의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의원에서 10항목, 참의원에서 23항목에 이르러 부대결의가 채택되어 법인법이 가결·성립한 것을 고려해보면 본래라면 법인법의 부칙에 소위 「재점검 조항」이 있었을 수도 있다. 「재점검 조항」이란 법률의 제정당시에 남아있던 과제나 장래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입법조치까지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확보하기 위해 두어지는 규정이며 이런 성격을 갖고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수정에 의해 두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인법에는 교육연구의 특성을 배려(법인법 제3조)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기초로 법을 운용한다는 취지가 정부측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바, 법인법이 과연 정부의 답변대로 운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초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파악하려면 그 근거조항으로서 재검토 조항이 필요하다.⁷⁵⁾

72) 앞글, 23쪽.

73) 앞글, 26쪽.

74) 앞글, 26쪽.

75)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16-17쪽.

제 5 장 결 어

21세기 새로운 모습의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에 대해 제도의 기본을 형성하는 운영조직, 목표·계획·평가, 인사 시스템 및 재무에 대해 각각의 구조, 특징,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법제의 긍정적 측면은 적극 수용하고, 부정적 측면은 수정 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상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2004년 4월에 새로이 출발한 일본의 국립대학법인은 단순히 국립대학에 그치지 않고 공사립대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으로써 대학사회를 크게 동요시켰으며, 일본의 대학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국립대학법인화의 최대 특징은 국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행정개혁의 흐름 속에서 실현된 제도였다라는 것이다. 광의로 행정기관이었던 국공립대학의 설치형태를 새로운 형태의 법인이나 새로운 관리기관화하는 정책논의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는 법인형태의 국립대학으로 제도화되었다. 즉 대학의 특성상 일반 행정기관의 인사나 회계 등의 준칙적용이 적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공비원조를 받는 것 이외에는 대학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다.

각 국립대학이 지금까지 국가 제도상의 운영에서 해방되어, 자율성과 자기책임으로 새로운 대학만들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의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는 각 국립대학이 정하는 중기목표·중기계획의 인가를 시작으로, 운영비교부금에 의한 공비원조의 상감방책이나 평가에 의한 자원배분 등은 결국에는 행정개혁을 겨냥한 공비삭감·인원삭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즉,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학장의 책임강화, 학외자의 학교운영참여, 교직원신분의 비공무원화 등의 제도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비용지원을 하는 만큼 대학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독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응하여 대학운영체제의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안이라면 우리의 상황에 맞는 대학개혁이 모델개발이 당연히 필요하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개혁 특히 국립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국립대학통폐합작업이 진행중이며, 국립대학법인화안도 대두되

고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의 요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속하되, 인사·행정·재정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결과에 대해 대학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학이 정부조직으로서 경직성을 벗어나 자율과 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체제의 다양화·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대학의 자율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제도를 도입하되, 여건이 되는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며,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영체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학법인화에 대하여 우려도 있다. 즉,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감축으로 인해 경영이 불안해지고 기초학문을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 교직원 신분의 비공무원화, 지방재정 자립도 및 지역산업의 유무에 따른 대학간 격차 확대 등이 구체적 사항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① 법인전환시 대학의 자율적 선택 및 지속적 재정지원 의무 법률 명시, ②기초학문 육성 프로그램 확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의 점진적 확대와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③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공무원 연금 수급 혜택 지속 부여 등의 보완책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법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채택된다면 일본의 법인화와는 달리 획일적인 제도개혁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국립대학개혁도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속에서 대학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행 경직된 대학운영체제를 다양화·자율화하는 차원에서 대학, 사회 그리고 정부가 지혜를 모아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 요망된다.

참고 문헌

- 김병주, 일본 '국립대학법인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학교육」, 통권123호 (2003. 5·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67-77쪽
- 조상균, 국립대학법인화와 노동관계의 변화, 「노동법학」, 제20호(2005. 6), 한국노동법학회, 201~225쪽
- 하혜수, 일본의 국립대학 독립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 제181호(2003.10), 현대사회연구소, 28~32쪽
- 中富公一, 国立大学法人法(案)にみる意思形成システムと学問の自由, 「人権21」, 第163号(2003.4), 岡山人権問題研究所, 27-37
- 田中真介, “国立大学法人法の問題点”, 「大学創造」, 第14号(2004), 高等教育研究会(編), 58-67
- 日本教職員組合高等教育改革プロジェクト(編), 大学法人法の問題点と対策, 東京文久堂, 2004
- 和田肇, “国立大学法人化と新たな労使関係,” 国立大学法人化の衝突と私大の挑戦, エイデル研究所, 2005.2, 138-144
- 田端博邦, “驚くべき国立大学法人法の内容 - 法案の分析”, 「国立大学はどうなる—国立大学法人法を徹底批判する」, 東京大学職員組合・独立行政法人反対首都圏ネットワーク(編), 花伝社(共栄書房), 2003.5, 6-29쪽
- 清水一彦, “国立大学法人의 構造와 特質”, 国立大学法人化の衝突と私大の挑戦, エイデル研究所, 2005.2, 54-62쪽.

참 고 문 헌

日本科学者会(編), 新しい国立大学法人像, 青木書店, 2002

蔵原清人, 国立大学法人法と学校設置制度, 法人格問題, 『大学と教育』, 第37号(2004.5), 東海高等教育研究所, 48-62쪽.

野田進 外, 国立大学法人の労働関係ハンドブック, 商事法務, 2004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国立大学法人法の概要』
(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4.htm)
(2005.10.19. 방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国立高等専門学校機構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6.htm 및 [03052707.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7.htm))(2005.10.19. 방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8.htm 및 [03052709.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9.htm))(2005.10.19. 방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国立大学財務・経営センター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0.htm 및 [030527011.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1.htm))(2005. 10. 19. 방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独立行政法人メディア教育開発センター法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2.htm 및 [030527013.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3.htm))(2005. 10. 19. 방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国立大学等の法人化について - 国立大学法人法等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の概要&骨子』(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4.htm 및 [030527015.htm](http://www.mext.go.jp/a_menu/koutou/houjin/030527015.htm))(2005.10.19. 방문).

부 록

(일본) 국립대학법인법

제 정 : 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2호)

최종 개정 :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최종 개정까지의 미시행 법령)

2005년 5월 25일 법률 제49호(미시행)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미시행)

제 1 장 총칙

제 1 절 통칙(제1조 ~ 제8조)

제 2 절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제9조)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 1 절 국립대학법인

제1관 임원 및 직원(제10조 ~ 제19조)

제2관 경영협의회 등(제20조· 제21조)

제3관 업무 등(제22조· 제23조)

제 2 절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

제 1 관 임원 및 직원(제24조 ~ 제26조)

제 2 관 경영협의회 등(제27조· 제28조)

제 3 관 업무 등(제29조)

제 3 장 중기일표 등(제30조· 제31조)

제 4 장 재무 및 회계(제32조 ~ 제34조)

제 5 장 잡칙(제35조 ~ 제37조)

제 6 장 벌칙(제38조 ~ 제41조)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목 적)

제 1 조 이 법률은 대학의 교육연구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부응함과 함께 일본의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 수준의 향상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을 설치하여 교육연구를 행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대학 공동이용기관을 설치하여 대학의 공동이용에 제공되는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제 2 조 ①이 법률에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을 설치할 것을 목적으로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국립대학」은 별표 제1의 제2란에 열거된 대학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은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설치를 목적으로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④이 법률에서 「대학공동이용기관」은 별표 2의 제2란에 열거된 연구 분야에 관하여 대학의 학술 연구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대학의 공동이용연구소를 말한다.

⑤이 법률에서 「중기목표」는 국립대학법인 및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이하 「국립대학법인 등」이라 한다.)이 달성해야 할 업무 운영에 관한 목표로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⑥이 법률에서 「중기계획」은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대학법인 등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⑦이 법률에서 「연도계획」은 준용 통칙법(제35조에서 준용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등이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부 록

⑧이 법률에서 「학칙」은 국립대학법인의 규칙 중 수업년한, 교육과정, 교육연구조직, 기타 학생의 수학적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교육연구 특성에 대한 배려)

제 3 조 국가는 이 법률의 운용에 있어서 국립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 특성을 항상 배려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의 명칭 등)

제 4 조 ①각 국립대학법인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각각 별표 1의 제1란 및 제3란에 열거된 바와 같다.

②별표 1의 제1란에 열거된 국립대학법인은 각각 동표의 제2란에서 열거하는 국립대학을 설치한다.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명칭 등)

제 5 조 ①각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각각 별표 2의 제1란 및 제3란에 열거된 바와 같다.

②별표 2의 제1란에 열거된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은 각각 동표의 제2란에서 열거하는 연구 분야에 관하여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공동이용기관을 설치한다.

(법인격)

제 6 조 국립대학법인 등은 법인으로 한다.

(자본금)

제 7 조 ①각 국립대학법인 등의 자본금은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출자된 금액으로 한다.

②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에 정해진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립대학법인 등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그 건물에 부속된 공작물(제6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출자의 목적으로 국립대학법인 등에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④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출자의 목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국립대학법인 등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는 당해 양도에 의하여 생긴 수입의 범위내에서 문부과학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국립대학법인 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액만큼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다.
- ⑥정부가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가액은 출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⑦전항의 평가 위원, 기타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 ⑧국립대학법인 등은 준용 통칙법 제 48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중요한 재산 중, 문부과학장관이 정하는 재산을 양도한 때는 당해 양도한 재산에 관한 부분으로서 문부과학장관이 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출자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은 그 금액만큼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한다.

(명칭의 사용제한)

제 8 조 국립대학법인 또는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각각 국립대학법인 또는 대학 공동이용기관 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2 절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

제 9 조 ①문부과학성에 국립대학법인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국립대학법인 등의 업무실적 평가에 관한 것.
2. 기타 이 법률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처리하는 것.

③전항에 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소장사무 및 위원, 기타 직원, 평가위원회에 관해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

제 1 절 국립대학법인

제 1 관 임원 및 직원

(임 원)

제10조 ①각 국립대학법인에 임원으로서 그 장(長)인 학장 및 감사 두 사람을 둔다.

②각 국립대학법인에 임원으로서 각각 별표 1의 제 4 란에 정한 인원수 이내의 이사를 둔다.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11조 ①학장은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직무를 행함과 함께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학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 및 이사로 구성된 회의(제5호에서 「임원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중기목표에 관한 의견(국립대학법인 등이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과학장관에게 보고하는 의견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

2. 이 법률에 의한 문부과학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사항

3. 예산의 작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당해 국립대학, 학부, 학과, 기타 중요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가 정하는 중요사항

③이사는 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을 보좌하여 국립대학법인의 업무를 관리하고 학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는 직무를 대리하며 학장

이 결원일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④감사는 국립대학법인의 업무를 감사한다.

⑤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장 또는 문부과학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원의 임명)

제12조 ①학장의 임명은 국립대학법인의 제청으로 문부과학장관이 행한다.

②전항의 제청은 제1호에서 열거하는 위원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위원 각 동수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학장선출회의」라 한다.)의 선출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영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2. 제2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연구협의회에서 선출된 자

③전항 각 호에 열거된 자 외에, 학장선출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 또는 이사를 학장선출회의의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수는 학장선출회의의 위원 총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학장선출회의에 의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이를 정한다.

⑤의장은 학장선출회의를 주재한다.

⑥이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학장선출회의의 의사절차, 기타 학장선출회의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장이 학장선출회의와 상의하여 정한다.

⑦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장의 선출은 인격이 고결하고 학식이 뛰어나며 또한 대학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⑧감사는 문부과학장관이 임명한다.

제13조 ①이사는 전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②학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지체없이 문부과학장관에게 보고함과 함께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장 또는 문부과학장관은 각각 이사 또는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명시 현재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

제15조 ①학장의 임기는 2년 이상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장선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각 국립대학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이사의 임기는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장이 정한다. 단, 이사의 임기 말일은 당해 이사를 임명한 학장의 임기 말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원이 그 최초 임명시 현재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었을 때의 전조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재임시 현재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로 본다.

(임원의 결격조항)

제16조 ①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비상근자 제외)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자는 비상근 이사 또는 감사가 될 수 있다.

(임원의 해임)

제17조 ①문부과학장관 또는 학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련된 임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②문부과학장관 또는 학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련된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을 때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문부과학장관 또는 학장은 각각 그 임명에 관련된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직무 집행이 적당하지 않아서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업무 실적이 악화된 경우, 그 임원이 계속해서 당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해 문부과학장관이 행하는 학장의 해임은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학장선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⑤학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부과학장관에게 보고함과 함께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임원 및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제18조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임 후에도 그러하다.

(임원 및 직원의 지위)

제19조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본다.

제 2 관 경영 협의회 등

(경영협의회)

제20조 ①국립대학법인에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협의회를 둔다.

②경영협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위원으로 조직한다.

1. 학장

2. 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직원

3.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로서 대학에 관한

폭넓고 깊은 식견을 가진 자 중,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육 연구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학장이 임명하는 자

③전항 제3호의 위원의 수는 경영협회의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④경영협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중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것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 중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것
3. 학칙(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회계 규정,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의 기준,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기준,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 규칙의 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4. 예산 작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운영 상황에 관한 자체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립대학법인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경영협회에 의장을 두되 학장이 담당한다.

⑥의장은 경영협회를 주재한다.

(교육연구평의회)

제21조 ①국립대학법인에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연구평의회를 둔다.

②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평의원으로 조직한다.

1. 학장

2. 학장이 지명하는 이사

3. 학부, 연구과, 대학 부설의 연구소, 기타 교육연구상 중요 조직의 장 중에서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4. 기타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이 지명하는 직원

③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전조 제4항 제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전조 제4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3. 학칙(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기타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규칙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편성 방침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원활한 수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지도, 기타 원조에 관한 사항
 7. 학생 입학, 졸업 또는 과정의 수료, 기타 학생의 재적에 관한 방침 및 학위 수여에 관한 방침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연구의 상황에 관한 자체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 ④교육연구 평의회에 의장을 두되 학장이 담당한다.
⑤의장은 교육연구평의회를 주재한다.

제 3 관 업무 등

(업무의 범위 등)

제22조 ①국립대학법인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국립대학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
2. 학생에 대하여 수학, 진로선택 및 心身の 건강 등에 관한 상담, 기타 원조를 행하는 것
3. 당해 국립대학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의 실시, 기타 당해 국립대학법인 이외의 자와의 연계에 의한 교육연구 활동을 행하는 것
4. 공개강좌의 개설, 기타 학생 이외의 자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5. 당해 국립대학의 연구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
6. 당해 국립대학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시하는 자에게 출자하는 것

7.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②국립대학법인은 전항 제6호에 열거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문부과학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립대학 및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학교의 수업료, 기타의 비용에 관한 필요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대학 부속의 학교)

제23조 국립대학에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또는 전수학교를 부속시켜 설치할 수 있다.

제 2 절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

제 1 관 임원 및 직원

(임 원)

제24조 ①각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에 임원으로서 그 장(長)인 기구장 및 감사 2인을 둔다.

②각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에 임원으로서 각각 별표 2의 제4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내의 이사를 둔다.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25조 ①기구장은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기구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장 및 이사로 구성된 회의(제5호에서 「임원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중기목표에 관한 의견 및 연도 계획에 관한 사항

2. 이 법률에 의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 또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
 3. 예산의 작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 기타 중요 조직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가 정한 중요사항
- ③이사는 기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장을 보좌하여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업무를 관리하고 기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를 대리하며, 기구장이 결원일 경우 그 직무를 행한다.
- ④감사는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업무를 감사한다.
- ⑤감사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구장 또는 문부과학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6조 제12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 중 「학장」은 「기구장」으로, 「국립대학법인」은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으로, 「학장선출회의」는 「기구장선출회의」로 하고,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제27조 제2항 제3호」로, 동항 제2호 중 「제2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는 「제2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로, 동조 제7항 중 「대학」은 「대학공동이용기관」으로 한다.

제 2 관 경영협의회 등

(경영 협의회)

- 제27조 ①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에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협의회를 둔다.
- ②경영협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위원으로 조직한다.
1. 기구장
 2. 기구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직원

3.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이외의 자로, 대학공동이용기관에 관하여 폭넓고 깊은 식견을 가진 자 중 다음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연구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구장이 임명하는 자

③전항 제3호의 위원수는 경영협회의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④경영협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중,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경영에 관한 것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 중, 대학 공동 이용 기관 법인의 경영에 관한 것

3. 회계규정,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퇴직수당의 지급 기준,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 기준, 기타 경영에 관련된 중요 규칙의 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작성 및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경영협회에 의장을 두되 기구장이 담당한다.

⑥의장은 경영협회를 주재한다.

(교육연구평의회)

제28조 ①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에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연구평의회를 둔다.

②교육연구 평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평의원으로 조직한다.

1. 기구장

2. 기구장이 지명하는 이사

3.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장

4. 기타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장이 지명하는 직원

5.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이외의 자로 당해 대학 공동이용기관이 행하는 연구와 동일 연구에 종사한 자 중(전조 제2항 제3호에 열거된 자 제외)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구장이 임명하는 자

③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전조 제4항 제1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에 관한 사항(전조 제4항 제2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에 관련된 중요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4. 직원 중, 전적으로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연구 계획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방침과 공동연구의 실시에 관한 방침에 관련된 사항
 6. 대학원에서의 교육, 기타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연구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 ④교육연구평의회에 의장을 두되 기구장이 담당한다.
- ⑤의장은 교육연구 평의회를 주재한다.

제 3 관 업무 등

(업무의 범위 등)

제29조 ①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대학공동이용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
2.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대학의 교원, 기타의 자로서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이 행하는 연구와 동일 연구에 종사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3. 대학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에서의 교육, 기타 그 대학에서의 교육에 협력하는 것
4.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연구 성과(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이용에 관련한 연구 성과를 포함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

5. 당해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시하는 자에게 출자하는 것
 6.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②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은 전항 제5호에 열거된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문부과학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 장 중기목표 등

(중기목표)

- 제30조 ①문부과학장관은 6년간 국립대학법인 등이 달성해야 할 업무 운영에 관한 목표를 중기목표로서 정하고 이를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에 제시함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그러하다.
- ②중기목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업무 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재무 내용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연구와 조직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평가와 당해 상황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③문부과학장관은 중기목표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립대학법인 등의 의견을 듣고 당해 의견을 배려함과 함께 평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기 계획)

- 제31조 국립대학법인 등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목표가 제시된 때에는 당해 중기목표에 근거하여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중기계획으로서 작성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 ②중기 계획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2. 업무 운영의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3. 예산(인건비 견적을 포함한다.), 수지계획 및 자금계획
 4. 단기 차입금의 한도액
 5.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의 그 계획
 6. 잉여금의 용도
 7. 기타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③문부과학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문부과학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중기 계획이 전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의 적정하면서 정확한 실시에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기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국립대학법인등은 제1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중기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무 및 회 계

(적립금의 처분)

- 제32조 ①국립대학법인 등은 중기목표 기간의 마지막 사업 연도에 관한 준용 통칙법 제4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를 한 후,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있을 때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 중 문부과학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당해 중기목표 기간의 다음 중기목표의 기간에 관한 전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중기 계획(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다음 중기목표의 기간에 있어서의 제22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 ②문부과학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국립대학법인 등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전3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납부금의 납부절차, 기타 적립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장기 차입금 및 채권)

- 제33조 ①국립대학법인등은 정령에서 정하는 토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나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 장기 차입을 하거나 또는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의 명칭으로 채권(이하 「채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국립대학법인등은 장기차입금 또는 채권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의 상환에 충당하기 위해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 장기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상환 기간은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 ③문부과학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채권자는 당해 채권을 발행한 국립대학법인 등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⑤전항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선취특권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 ⑥국립대학법인 등은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 채권 발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⑦상법(1899년 법률 제48호)제309조, 제310조 및 제311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대해 준용한다.
 - ⑧전 각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차입금 또는 채권에 관한 필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상환 계획)

제34조 ①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국립대학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 장기차입금 및 채권 상환 계획을 세워서 문부과학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문부과학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장 잡 칙

(독립행정법인통칙법 규정의 준용)

제35조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3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31조 내지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61조 및 제63조 내지 제66조 규정은 국립대학법인등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 규정 중 「주무 대신」은 「문부과학장관」으로, 「주무성령」은 「문부과학성령」으로, 「평가 위원회」 및 「당해 평가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로 하고, 다음 표의 상란(왼쪽)에 열거하는 동법의 규정 중 동표의 중란(중간)에 열거하는 자구는 각각 동표의 하란(오른쪽)에 열거하는 자구로 한다.

대체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대체되는 자구	대체하는 자구
제3조 제3항	개별법	국립대학법인법
제14조 제1항	장(이하 「법인의 장」이라고 한다.)	학장(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에 있어서는 기구장.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법인의 장	학장
	이 법률	국립대학법인법
제14조 제3항	제20조 제1항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7항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에 있어서는, 동법 제26조에서 준용하는 동항)
	법인의 장	학장

부 록

대체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대체되는 자구	대체하는 자구
제15조 제2항, 제16조 및 제24조 내지 제26조	법인의 장	학장
제28조 제2항	주무성령(당해 독립행정법인을 관할하는 내각부 또는 각성의 내각부령 또는 성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문부과학성령
제31조 제1항	전조 제1항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 제1항
	중기계획	동항에 규정하는 중기 계획(이하 「중기 계획」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전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후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후
제33조	중기목표의 기간	국립대학법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기목표(이하 「중기목표」라 한다.)의 기간
제34조 제2항	고려하여	고려함과 함께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에 대한 독립행정법인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법(2003년 법률 제114호)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의 교육연구 상황에 대한 평가의 실시를 요청하고, 당해 평가의 결과를 존중하여
제38조 제2항	감사의 의견(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독립 행정법인에 있어서는,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의견. 이하 같다.)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의견
제38조 제4항	및 감사	그리고 감사 및 회계감사인
제39조	독립행정법인(그 자본의 액수, 기타 경영 규모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않는 독립행정법인을 제외한다.)	국립대학법인 등
제41조	제4조(제2항 제2호를 제외한다.)	제4조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39조	국립대학법인법 제35조에서 준용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39조
제44조 제3항	제30조 제1항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 제1항
제44조 제5항	개별법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법 제32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체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대체되는 자구	대체하는 자구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4호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제45조 제5항	개별법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	국립대학법인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8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5호	국립대학법인법 제31조 제2항 제5호
제50조	이 법률 및 이것	이 법률 및 국립대학법인법과 이들
제52조 제3항	실적 및 중기 계획의 제30조 제2항 제3호의 인건비의 견적	실적
제65조 제1항	개별법	국립대학법인법

(재무장관과의 협의)

제36조 문부과학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재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44항의 규정에 의해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 또는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금액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
2. 제22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제1항·제2항·제6항, 제34조 제1항 또는 준용 통칙법 제45조 제1항 단서·제2항 단서 또는 준용 통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목표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32조 제1항 또는 준용 통칙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준용 통칙법 제4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조 ①교육기본법(1947년 법률 제25호),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등을 국가로

간주하여 이들 법령을 준용한다.

②박물관법(1951년 법률 제285호),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등을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으로 간주하여 이들 법령을 준용한다.

제 6 장 벌 칙

제38조 제18조(제2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준용 통칙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한 국립대학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대학 공동이용기관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은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한 국립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대학공동이용기관 법인의 임원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률 또는 준용 통칙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과학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인가 또는 인정을 받지 않았을 때
2. 이 법률 또는 준용 통칙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부과학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3. 이 법률 또는 준용 통칙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해야 하는 경우에 공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표를 한 때
4.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한 때
5.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한 때
6.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부과학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7. 준용 통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령에 위반하여 등기를 소홀히 한 때
8. 준용 통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 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하여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때
9. 준용 통칙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또는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비치하지 않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은 때
10. 준용 통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한 때
11. 준용 통칙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제41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시행 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2005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학장이 될 자의 지명 등에 관한 특례)

제 2 조 ①문부과학장관은 이 법률의 시행일에 있어 법률 시행시 현재 부칙 별표 1의 상란에 열거되어 있는 대학의 학장인 자를 각각 동표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국립대학법인의 학장이 될 자로서 지명한다. 단, 당해 지명 후, 지명된 자 이외의 자가 새로 당해 대학의 학장이 된 때에는 당해 지명된 자를 대신하여 당해 학장을 국립대학법인의 학장이 될 자로 지명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의 학장이 되어야 할 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준용 통칙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 록

③문부과학장관은 부칙 별표 1의 상란에서 열거하는 대학의 학장인 자의 임기 말일이 2004년 3월 31일인 경우, 준용 통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선출회의(학장, 부학장 및 학부, 연구과, 대학부설연구소, 기타 교육연구상 중요 조직의 장(구 설치법(국립대학법인법등의시행에의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2003년 법률 제117호. 이하 「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 국립학교설치법(1949년 법률 제150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의회의 평의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구 설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영자문회의의 위원 중 당해 대학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에서 제1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자 중 선출된 자를 해당 대학의 학장의 제청으로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일에 동포의 하란에 열거하는 국립대학법인의 학장으로서 임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되어 준용 통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등의 성립시 학장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하는 학장의 임기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별표 1의 상란에 열거된 대학의 학장으로서의 임기의 잔임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

제 3 조 ①별표 1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및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은 준용 통칙법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법 제2조 규정의 시행시에 성립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국립대학법인 등은 준용 통칙법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등의 성립후 지체 없이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직원의 인계 등)

제 4 조 국립대학법인 등 성립시 현재 부칙 별표 1의 상란에 열거된 기관의 직원인 자(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법(2003년 법률 제94호) 부칙 제2조 또는 독립행정법인해양연구개발기구법(2003년 법률 제95

호)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또는 독립행정법인해양연구개발기구의 직원으로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별도로 발령을 발표하지 않는 한, 국립대학법인 등의 성립일에 각각 동표의 하란에 열거된 국립대학법인 등의 직원이 된 것으로 한다.

제 5 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립대학법인등의 직원으로 된 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제8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각 국립대학법인 등의 직원을 동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등으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은 것을 임명권자의 요청에 따라 동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직 국가공무원등으로 되기 위해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부칙 별표1의 상란에 열거하는 기관(이하 「구 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 동표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국립대학법인 등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1953년 법률 제182호)에 근거하는 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각 국립대학법인 등은 전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의 직원의 퇴직시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가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으로 간주된 자를 포함한다.)으로서의 계속된 재직기간을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의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본다.

③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의 전일에 구 기관의 직원으로서 재직하는 자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국립대학법인등의 직원으로 되고, 또한 계속해서 국립대학법인등의 직원으로서 재직한 후 계속하여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의 동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그 자의 국립대학법인등의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동항에서 규정하는 직원으로서의 계속한 재직기간으로 간주한다. 단, 그 자가 국립대학법인 등을 퇴직하여 퇴직수

당(이것에 상당하는 급부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각 국립대학법인등은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의 전일에 구 기관의 직원으로서 재직하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부칙 별표 1의 하란에 열거된 국립대학법인 등의 직원이 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로부터 고용보험법(1974년 법률 제116호)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사이에 당해 국립대학법인등을 퇴직한 자로서 퇴직한 날까지 구 기관의 직원으로서 재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수당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수당으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등의 직원이 된 자로서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의 전일에 문부과학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아동수당법(1971년 법률 제73호) 제7조 제1항(동법 부칙 제6조 제2항, 제7조 제4항 또는 제8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하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 있는 자가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에 아동수당 또는 동법 부칙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급부(이하 이 조에서 「특례 급부 등」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에 대한 아동수당 또는 특례 급부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에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한다.)의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아동수당 또는 특례 급부등의 지급은 동법 제8조 제2항(동법 부칙 제6조 제2항, 제7조 제4항 또는 제8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의 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각 국립대학법인등의 직원으로 된 자의 직원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제 8 조 ①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시 현재 존재한 국가공무원법 제108조

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원단체로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립대학법인등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자는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시 노동조합법(1949년 법률 제174호)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해당직원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인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노동조합으로 된 자는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노동위원회의 증명을 받고, 또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登記하지 않으면 그 날의 경과에 의하여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 된 자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노동조합법 제2조 단서(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 9 조 ①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시 현재 국가가 갖는 권리 및 의무(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 전 국립학교특별회계법(1964년 법률 제55호. 이하 제2항 및 다음 조에 있어 「구 특별회계법」이라 한다.) 부칙 제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특별회계법에 근거하는 국립학교특별회계(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구 특별회계」라고 한다.)로부터 산업투자 특별회계 사회자본 정비계정에 이월하게 된 이월금에 관한 의무를 포함한다.)중, 각 국립대학법인등이 행한 제22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한 것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국립대학법인등이 승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립대학법인등이 국가가 갖는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경우는 당해 국립대학법인등에 승계된 권리에 관한 재산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의 가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승계된 의무에 관한 부채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의 가액(국립대학법인에 있어서는 당해 가액에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립대학법인이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대해

여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로부터 당해 국립대학법인등에 대하여 출자된 것으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재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등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는 당해 양도에 의하여 생긴 수입의 범위내에서 문부과학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센터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을 붙여 출자된 것으로 한다.

④문부과학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재산의 가액은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⑥전항의 평가 위원, 기타 평가에 관한 필요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시에 구 특별회계법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문부과학장관으로부터 구 기관의 장에게 교부되어 그 경리를 위임받은 금액에 잔여가 있을 때는, 그 잔여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일에 각 국립대학법인등에 장학을 목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기부금의 경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정비법 제2조의 규정의 시행전에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의주식매각수입의 활용으로 의한 사회자본의정비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87년 법률 제86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서 「사회자본정비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투자 특별회계 사회자본정비계정으로부터 구 특별회계에 이월되었던 금액(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립대학법인등에 승계된 것에 한한다.)은,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당해 국립대학법인등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출해 준 것으로 보아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동항의 규정에 의하는 대부금의 상환기

간, 상환방법, 상환기한의 앞당김 기타 상환에 관한 필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채무의 부담 등)

제12조 ①문부과학장관이 정하는 국립대학법인은 센터에 대하여 독립행정법인국립대학재무·경영센터법(2003년 법률 제115호) 부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가 승계한 차입금 채무 중, 당해 국립대학법인의 시설 및 설비의 정비에 필요로 한 부분으로서 문부과학장관이 정하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다.

②문부과학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무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국립대학법인은 문부과학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승계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 당해 채무에 관한 이자의 지불, 기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필요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⑤전항의 채무의 상환 및 해당 채무에 관한 이자의 지불에 대해서는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장기 차입금 또는 채권 발행에 의한 수입으로써 충당해서는 아니된다.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3조 ①국가는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시 현재 각 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립대학법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당해 국립대학법인등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는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시 현재 각 구 기관의 직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립대학법인등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당해 국립대학법인등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의 무이자 대부 등)

제14조 ①국가는 당분간 국립대학법인등에 대하여 그 시설의 정비에서 사회자본정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충당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조의 표 제45조 제5항의 항 중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제33조 제1항이나 제2항 또는 부칙 제14조 제1항」으로 한다.

②전항의 국가의 대부금 상환기간은 5년(2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한다.)이내로 정령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전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상환 방법, 조기상환, 기타 상환에 관한 필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대학법인등에 대하여 대부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대부 대상인 시설의 정비에 대하여 당해 대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조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보조에 관해서는 당해 대부금의 상환시에 당해 대부금의 상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⑤국립대학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은 무이자 대부금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상환 기한을 앞당겨 조기상환을 행한 경우(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해 상환은 당해 상환기한 도래시 이행된 것으로 본다.

(구 설치법에서 규정한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①부칙 별표 1의 상란에서 열거하는 대학은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에 각각 동표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국립대학법인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별표 1의 제2란에 열거하는 국립대학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②구 설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국립 久里浜(구리하마)양호학교는,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대학의 성립시에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

바) 대학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筑波(쓰쿠바)대학에 부속하여 설치된 양호학교로 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①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에 현재 부칙 별표 2의 상란에 열거된 국립단기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중란에 열거된 국립대학법인은 당해 학생이 당해 국립단기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 동표의 하란에 열거된 단기대학(이하 「신 국립단기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신 국립단기대학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학생이 당해 신 국립단기대학에 재학하지 않게 된 날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국립단기대학을 설치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호 중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부칙 별표 2의 하란에 열거된 신 국립단기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라 한다.

④부칙 별표 2의 상란에 열거된 국립단기대학은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에 각각 동 표의 하란에 열거된 신 국립단기대학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에 현재 국립학교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2002년 법률 제2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9월 30일에 당해 대학에 재학하는 자가 재학하지 않게 된 날까지 존속하게 되는 도서관정보대학, 山梨(야마나시)대학 및 山梨(야마나시)의과대학과 국립학교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 2003년 법률 제29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9월 30일에 당해 대학에 재학하는 자가 재학하지 않게 된 날까지 존속하게 되는 도쿄쇼센대학, 도쿄수산대학, 福井(후쿠이)대학, 福井(후쿠이)의과대학, 神戸(고베)상선대학, 島根(시마네)대학, 시마네의과대학, 香川(가가와)대학, 香川(가가와)의과대학, 高知(고우찌)대학, 高知의과대학, 규슈예술공과 대학, 佐賀(사가)대학, 사가िका 대학, 大分(오이타) 대학, 大分(오이타)의과대학, 宮崎(미야자끼)대학 및 宮崎(미야자끼)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는 당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또는 당해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부 록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부칙 별표 3의 상란에 열거된 자별로 각각 동표의 하란에 열거된 국립대학에서 행하는 것으로, 당해 국립대학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교육과정의 이수, 기타 당해 학생의 교육에 관한 필요 사항은 당해 국립대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제18조 각 국립대학법인 등이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 권리에 대해 해야 하는 등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국가의이해관계가있는소송에대한법무장관의권한등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 조치)

제19조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시에 현재 계속중인 국립대학법인등이 행하는 제22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한 소송사건 또는 비송사건으로서 각 국립대학법인등이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국립대학법인 등을 국가의이해관계가 있는소송에관한법무대신의권한등에관한법률(1947년 법률 제194호)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행정청으로 보아 동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교육연구평의회 의 평의원)

제20조 국립대학법인등의 성립후 최초의 제21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육연구평의회는 다음 각호에 열거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평의원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립대학법인의 교육연구평의회 :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에 열거된 자
2.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교육연구평의회 :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자

(명칭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이 법률의 시행시에 현재 그 명칭 중에 국립대학법인 또는 대

학공동이용기관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후 6월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령에의 위임)

제22조 부칙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전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국립대학법인 등의 설립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필요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5년 5월 25일 법률 제49호)

(시행 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2005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와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장이 될 자의 지명 등에 관한 특례)

제 2 조 ①문부과학장관은 이 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 현재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국립대학법인법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 기술단기대학(이하 「구 筑波(쓰쿠바) 기술단기대학법인」이라 한다.)의 학장인 자를, 동일(同日)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국립대학법인법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 기술대학(이하 「신 筑波(쓰쿠바)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의 학장이 될 자로서 지명한다. 단, 당해 지명 후에 지명된 자 이외의 자가 새로이 구 筑波(쓰쿠바) 기술단기대학법인의 학장이 된 경우에는 당해 지명된 자를 대신하여 당해 학장을 신 筑波(쓰쿠바) 기술대학법인의 학장이 될 자로서 지명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학장이 될 자의 지명에 관해서는 준용 통칙법(국립대학법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130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되고, 준용 통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 법인의 성립시 학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되는 학장의 임기는 국립대학법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법인의 학장으로서의 임기의 잔 임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④문부과학장관은 이 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에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국립대학법인법 별표 1에서 규정한 국립대학법인 富山(도야마)대학, 국립대학법인 富山醫科藥科(도야마의과약과)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高岡(다카오카)단기대학(이하 각각 「舊 富山(도야마)대학 법인」, 「舊 富山(도야마)의과약과대학법인」 및 「구 高岡(다카오카)단기대학법인」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한 규정(이하 「합동학장선출회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들 국립대학법인에 각각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장선출회의의 위원의 중 각각의 학장선출회의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학장선출회의」라 한다)에서 동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자 중에서 선출된 자를 합동학장선출회의의 제청으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국립대학법인법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富山(도야마)대학(이하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라 한다)의 학장으로 될 자로 지명한다. 단, 당해 지명의 후에 당해 지명된 자가 결원이 된 경우 합동학장선출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자 중 다시 선출된 자를 합동학장선출회의의 제청으로 당해 지명된 자를 대신하여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의 학장이 될 자로 지명한다.

⑤합동학장선출회의 규정에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을 정한다.

1. 합동학장선출회의를 구성하는 자 중 국립대학법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수는 합동학장선출회의의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2. 합동학장선출회의에 의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으로 이를 정하는 것
3. 의장은 합동학장선출회의를 주재할 것
4. 전3호에서 정하는 것 외 합동학장선출회의의 의사 절차, 기타 합동학장선출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합동학장선출회의에 의견을

물어서 정할 것

제 3 조(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기술대학 및 국립대학법인 富山(도야마)대학의 성립) ①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및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하 「신 국립대학법인」이라 총칭한다)은 준용 통칙법 제17조 및 국립대학법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법률의 시행시 성립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신 국립대학법인은 준용 통칙법 제1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 후 지체 없이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4 조(구 국립대학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이었던 자(그 최초 임명시 현재 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었던 자를 제외한다)가 계속해서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에게 임명된 경우, 국립대학법인법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임명시 현재 新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 본다.

②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舊 富山(도야마)의과약과대학법인 및 구 高岡(다카오카)단기대학 법인(이하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이라 총칭한다.)의 이사 또는 감사이었던 자(그 최초 임명시 현재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었던 자를 제외한다.)가 계속해서 新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임명된 경우 국립대학법인법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그 임명시 현재 新 富山(도야마) 대학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인 자로 본다.

제 5 조(구 국립대학법인의 해산 등) ①舊 筑波(쓰쿠바) 기술단기대학법인 및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이하 「구 국립대학법인」이라 총칭한다.)은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해산한 것으로 하고 다음 조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자산을 제외하고 그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는 그 당시에 구 筑波(쓰쿠바)기술단지대학 법인에 관련된 것은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이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에 관계되는 것은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각각 승계한다.

②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현재 구 국립대학법인이 가진 권리 중 신 국립대학법인이 그 업무를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국가가 승계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승계한 자산의 범위, 기타 당해 자산의 나라에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④구 국립대학법인의 2005년 4월 1일에 시작한 사업연도(이하 「최종사업연도」라고 한다.)는 각각 구 국립대학법인이 해산하는 날 전날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⑤구 국립대학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서의 업무의 실적에 대해서는 구 筑波(쓰쿠바)기술단지대학법인에 관련되는 것은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이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에 관련되는 것은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각각 준용 통칙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권고는 각각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또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⑥구 국립대학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관련된 결산과 준용 통칙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및 사업 보고서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구 筑波(쓰쿠바)기술단지대학법인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이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각각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⑦구 국립대학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서 이익 및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구 筑波(쓰쿠바)기술단지대학법인에 관련되는 것은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이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에 관련되는 것은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각각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⑧구 국립대학법인의 적립금의 처분은 구 국립대학법인이 해산하는 날 전날에 중기목표의 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구 筑波(쓰쿠바)기술단지대학법인에 관련되는 것은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이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에 관련되는 것은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각각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⑨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국립대학법인이 행한 것으로 되는 구 국립대학법인이 행한 사업에 관련된 결산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신 국립대학법인이 행한 사업에 관련된 결산 등의 업무로 보아 국립대학법인법 제11조 제20조 4항, 제32조, 제36조 및 제40조와 준용 통칙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4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법인법 제32조 제1항 중 「당해 중기목표의 기간의 다음」은 「신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법인법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2005년 법률 제49호)부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 국립대학법인을 말한다.)의 최초」로, 「당해 다음」은 「당해」로, 준용 통칙법 제38조 제1항 중 「매 사업 연도」는 「구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법인법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 국립대학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최종사업연도(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최종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당해 사업 연도」는 「당해 최종 사업 연도」로, 동조 제2항 중 「당해 사업 연도」는 「당해 최종 사업 연도」로, 준용 통칙법 제44조 제1항 중 「매 사업 연도」는 「구 국립대학법인의 최종 사업 연도의」로, 동조 제2항 중 「매 사업 연도」는 「구 국립대학법인의 최종 사업 연도의」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최종 사업 연도보다 전의 사업 연도에 있어 구 국립대학법인이 적립한 적립금」이라 한다.

⑩국립대학법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또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구 국립대학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때에는 각각 그 승계시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또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가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 구 국립대학법인에 출연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부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정부가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또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에 출

자한 것으로 한다.

⑪전항에 규정한 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또는 신 富山(도야마)대학 법인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에 의하여 생긴 수입의 범위내에서 국립대학법인법 부칙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부과학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재무·경영 센터(center)에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건을 붙여 출자된 것으로 한다.

⑫제10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가액은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⑬전항의 평가위원, 기타 평가에 관한 필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⑭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 국립대학법인이 해산된 경우의 해산 등기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또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승계한 국립대학법인법 부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에 상당한 금액은 동법 부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당해 국립대학법인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부한 것으로 보아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에 정한 것 외 동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상환 기간, 상환 방법, 조기상환, 기타 상환에 관한 필요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7 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①국가는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현재 구 국립대학법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정령에서 정한 것을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법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이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신 국립대학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현재 구 국립대학법인의 직원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 법인의 직원의 주거용

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 직원의 주거의 舊 富山(도야마)대학 법인 등의 직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 직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 국립대학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중기목표에 관한 특례) 신국립대학법인의 최초 중기목표 기간에 관해서는, 국립대학법인법 제30조 제1항 중 「6년간」을, 「4년 6월간」으로 한다.

제 9 조 전조의 중기목표에 관련된 준용 통칙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에 관해서는,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에 있어서는 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법인이 해산일 전일을 포함한 중기목표의 기간에서의 업무 실적을, 신 富山(도야마)대학 법인에 있어서는 舊 富山(도야마)대학 법인 등의 해산일 전일을 포함한 중기목표의 기간에서의 업무 실적을 각각 고려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구 국립대학법인이 설치한 대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현재 구 筑波(쓰쿠바) 기술단기대학법인 및 구 高岡(다카오카)단기대학법인이 각각 설치한 단기 대학(제4항에서 「구 단기대학」이라 한다.)에 재학하는 학생이 존재한 경우 당해 학생이 당해 단기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기 대학으로서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에 있어서는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부를,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에 있어서는 高岡(다카오카) 단기대학부를 각각 설치한다.

②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부 및 高岡(다카오카)단기대학부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학생이 당해 단 대학에 재학하지 않게 된 날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립대학법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호 중 「국립대학」은 「국립대학(국립대학법인법)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단기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 동일)』으로 한다.

④구 단기대학은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법인이 설치한 단기대학에 있어서는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이 단기대학으로서 설치한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부로, 구 高岡(다카오카)단기대학법인이 설치한 단기 대학에 있어서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단기대학으로서 설치한 高岡(다카오카)단기대학부로 각각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신 국립대학법인의 성립시 현재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및 舊 富山(도야마)의과약과대학법인이 각각 설치한 대학에 재학하는 자는 당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또는 당해 대학의 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설치한 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신 富山(도야마) 대학법인이 설치한 대학은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행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이수, 기타 당해 학생의 교육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이 설치한 대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구 국립대학법인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구 국립대학법인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법(제12조 및 제13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구 筑波(쓰쿠바)기술단기대학법인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 筑波(쓰쿠바)기술대학법인에 관하여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舊 富山(도야마)대학법인 등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신 富山(도야마)대학법인에 관하여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각각 간주한다.

제13조(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전조에서 정한 것 외, 신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

(일본) 국립대학법인법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록

부칙 별표 1 (부칙 제 2 조 , 부칙 제 4 조, 부칙 제 6 조 , 부칙 제15조 관계)

기 관	국립대학법인 등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北海道(홋카이도) 대학	국립대학법인 北海道(홋카이도)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北海道(홋카이도)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北海道(홋카이도)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室蘭(무로란) 공업대학	국립대학법인 室蘭(무로란) 공업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小樽(오타루) 상과대학	국립대학법인 小樽(오타루) 상과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帶廣(오비히로) 축산대학	국립대학법인 帶廣(오비히로) 축산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旭川(아사히카와) 의과대학	국립대학법인 旭川(아사히카와) 의과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北見(기타미) 공업대학	국립대학법인 北見工業(기타미) 공업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弘前(히로사키)대학	국립대학법인 弘前大學(히로사키)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岩手(이와테) 대학	국립대학법인 岩手(이와테)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北(도호쿠)대학	국립대학법인 東北(도호쿠)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宮城(미야기)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宮城(미야기)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秋田(아키타) 대학	국립대학법인 秋田(아키타)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山形(야마가타) 대학	국립대학법인 山形(야마가타)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福島(후쿠시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福島(후쿠시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茨城(이바라키) 대학	국립대학법인 茨城(이바라키)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筑波(쓰쿠바)대학 및 구 설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국립 久里浜(구리하마) 양호학교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宇都宮(우쓰노미야) 대학	국립대학법인 宇都宮(우쓰노미야)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群馬(군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群馬(군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埼玉(사이타마)대학	국립대학법인 埼玉(사이타마)대학

기 관	국립대학법인 등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千葉(치바) 대학	국립대학법인 千葉(치바)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 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의과치과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의과치과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 외국어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외국어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 학예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학예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 농공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농공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 예술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예술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 공업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공업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東京(도쿄) 해양대학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해양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お茶の水(오차노미즈) 여자대학	국립대학법인 お茶の水(오차노미즈) 여자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전기통신대학	국립대학법인 전기통신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一橋(히토쓰바시) 대학	국립대학법인 一橋(히토쓰바시)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横浜(요코하마)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 横浜(요코하마) 국립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新潟(니이가타)대학	국립대학법인 新潟(니이가타)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長岡(나가오카)기술과학대학	국립대학법인 長岡(나가오카)기술과학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上越(조에쓰)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上越(조에쓰)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富山(도야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富山(도야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富山(도야마) 의과약과대학	국립대학법인 富山(도야마) 의과약과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金澤(가나자와) 대학	국립대학법인 金澤(가나자와)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福井(후쿠이) 대학	국립대학법인 福井(후쿠이)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山梨(야마나시) 대학	국립대학법인 山梨(야마나시)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信州(신슈) 대학	국립대학법인 信州(신슈) 대학

부 록

기 관	국립대학법인 등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岐阜(기후) 대학	국립대학법인 岐阜(기후)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静岡(시즈오카) 대학	국립대학법인 静岡(시즈오카)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浜松(하마마쓰) 의과대학	국립대학법인 浜松(하마마쓰) 의과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名古屋(나고야) 대학	국립대학법인 名古屋(나고야)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愛知(아이치)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愛知(아이치)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名古屋(나고야공업) 대학	국립대학법인 名古屋(나고야)공업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豊橋(도요하시) 기술과학대학	국립대학법인 豊橋(도요하시) 기술과학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三重(미에) 대학	국립대학법인 三重(미에)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滋賀(시가) 대학	국립대학법인 滋賀(시가)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滋賀(시가) 의과대학	국립대학법인 滋賀(시가) 의과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京都(교토) 대학	국립대학법인 京都(교토)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京都(교토)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京都(교토)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京都(교토) 공예섬유대학	국립대학법인 京都(교토) 공예섬유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大阪(오사카) 대학	국립대학법인 大阪(오사카)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大阪(오사카) 외국어대학	국립대학법인 大阪(오사카) 외국어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大阪(오사카)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大阪(오사카)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兵庫(효고)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兵庫(효고)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神戸(고베) 대학	국립대학법인 神戸(고베)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奈良(나라)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奈良(나라)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奈良(나라)여자대학	국립대학법인 奈良(나라) 여자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和歌山(와카야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和歌山(와카야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鳥取(돗토리) 대학	국립대학법인 鳥取(돗토리) 대학

기 관	국립대학법인 등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島根(시마네) 대학	국립대학법인 島根(시마네)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岡山(오카야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岡山(오카야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廣島(히로시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廣島(히로시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山口(야마구찌) 대학	국립대학법인 山口(야마구찌)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德島(도쿠시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德島(도쿠시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鳴門(나루토)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鳴門(나루토)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香川(가가와) 대학	국립대학법인 香川(가가와)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愛媛(에히메) 대학	국립대학법인 愛媛(에히메)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高知(고우찌) 대학	국립대학법인 高知(고우찌)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福岡(후쿠오카) 교육대학	국립대학법인 福岡(후쿠오카) 교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九州(규슈) 대학	국립대학법인 九州(규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九州(규슈) 공업대학	국립대학법인 九州(규슈) 공업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佐賀(사가) 대학	국립대학법인 佐賀(사가)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長崎(나가사키) 대학	국립대학법인 長崎(나가사키)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熊本(구마모토) 대학	국립대학법인 熊本(구마모토)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大分大學(오이타) 대학	국립대학법인 大分(오이타)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宮崎(미야자끼) 대학	국립대학법인 宮崎(미야자끼)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鹿兒島(가고시마) 대학	국립대학법인 鹿兒島(가고시마) 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鹿屋(카노야) 체육대학	국립대학법인 鹿屋(카노야) 체육대학
구 설치법 제3조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琉球(류큐) 대학	국립대학법인 琉球(류큐) 대학
구 설치법 제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종합연구대학원대학	국립대학법인 종합연구대학원대학

부 록

기 관	국립대학법인 등
구 설치법 제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국립대학법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구 설치법 제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北陸(호쿠리쿠) 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국립대학법인 北陸(호쿠리쿠) 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구 설치법 제3조의3 제1항에 규정한 奈良(나라) 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국립대학법인 奈良(나라) 첨단과학기술대학원대학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1항의 표에 열거된 筑波(쓰쿠바) 기술단기대학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 기술단기대학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1항의 표에 열거된 高岡(다카오카) 단기대학	국립대학법인 高岡(다카오카) 단기대학
구 설치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학 공동이용기관(이하 「구대학공동이용기관」이라 고 한다.)중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인간문화 연구기구의 연구분야에 관한 연구를 행하는 기 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인간문화연구기구
구 대학공동이용기관 중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자연과학연구기구의 연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 는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자연과학연구기구
구 대학공동이용기관 중 대학공동이용기관법 인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의 연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
구 대학공동이용기관 중 대학공동이용기관법 인 정보·시스템연구기구의 연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정보·시스템연구기구

부칙 별표 2 (부칙 제16조 관계)

국립 단기 대학	국립대학법인	신 국립단기대학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北海道(홋카이도)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北海道(홋카이도) 대학	北海道(홋카이도)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학교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10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하게 된 弘前(히로사키)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弘前(히로사키) 대학	弘前(히로사키)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東北(도호쿠)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東北(도호쿠) 대학	東北(도호쿠)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秋田(아키타)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秋田(아키타) 대학	秋田(아키타)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筑波(쓰쿠바)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 대학	筑波(쓰쿠바)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학교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21호)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하게 된 新潟(니이가타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新潟(니이가타) 대학	新潟(니이가타)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信州(신슈)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信州(신슈) 대학	信州(신슈)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학교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1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하게 된 岐阜(기후)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岐阜(기후) 대학	岐阜(기후)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京都(교토)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京都(교토) 대학	京都(교토)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학교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10)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하게 된 山口(야마구찌)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山口(야마구찌) 대학	山口(야마구찌)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徳島(도쿠시마)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徳島(도쿠시마) 대학	徳島(도쿠시마)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九州(규슈)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九州(규슈) 대학	九州(규슈)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長崎(나가사키)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長崎(나가사키) 대학	長崎(나가사키)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구 설치법 제3조의5 제2항의 표에 열거된 熊本(구마모토)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국립대학법인 熊本(구마모토) 대학	熊本(구마모토) 대학 의료기술 단기대학부

부칙 별표 3 (부칙 제17조 관계)

재학생	필요한 교육을 행하는 국립대학
도서관정보대학에 재학하는 자	筑波(쓰쿠바) 대학
東京(도쿄) 상선대학에 재학하는 자	東京(도쿄) 해양대학
東京(도쿄) 수산대학에 재학하는 자	
山梨(야마나시) 대학에 재학하는 자	山梨(야마나시) 대학
山梨(야마나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福井(후쿠이) 대학에 재학하는 자	福井(후쿠이) 대학
福井(후쿠이)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神戸(고베) 상선대학에 재학하는 자	神戸(고베) 대학
島根(시마네) 대학에 재학하는 자	島根(시마네) 대학
島根(시마네)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香川(가가와) 대학에 재학하는 자	香川(가가와) 대학
香川(가가와)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高知(고우찌) 대학에 재학하는 자	高知(고우찌) 대학
高知(고우찌)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九州(규슈) 예술공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九州(규슈) 대학
佐賀(사가) 대학에 재학하는 자	佐賀(사가) 대학
佐賀(사가)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大分(오이타) 대학에 재학하는 자	大分(오이타) 대학
大分(오이타)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宮崎(미야자키) 대학에 재학하는 자	宮崎(미야자키) 대학
宮崎(미야자키)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자	

별표 1 (제 2 조, 제 4 조, 제10조, 부칙 제 3 조, 부칙 제15조 관계)

국립대학법인의 명칭	국립대학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정수
국립대학법인 北海道(홋카이도) 대학	北海道(홋카이도) 대학	北海道(홋카이도)	7
국립대학법인 北海道(홋카이도)교육대학	北海道(홋카이도)교육 대학	北海道(홋카이도)	4
국립대학법인 室蘭(무로란)공업 대학	室蘭(무로란)공업 대학	北海道(홋카이도)	3
국립대학법인 小樽(오타루)상과 대학	小樽(오타루)상과 대학	北海道(홋카이도)	2
국립대학법인 帶廣(오비히로) 축산대학	帶廣(오비히로) 축산대학	北海道(홋카이도)	2
국립대학법인 旭川(아사히카와)의과대학	旭川(아사히카와)의과 대학	北海道(홋카이도)	4
국립대학법인 北見(기타미)공업 대학	北見(기타미) 공업대학	北海道(홋카이도)	2
국립대학법인 弘前(히로사키)대학	弘前(히로사키)대학	青森縣(아오모리현)	5
국립대학법인 岩手(이와테) 대학	岩手(이와테) 대학	岩手縣(이와테현)	4
국립대학법인 東北(도호쿠)대학	東北(도호쿠)대학	宮城縣(미야기현)	7
국립대학법인 宮城(미야기) 교육대학	宮城(미야기) 교육대학	宮城縣(미야기현)	3
국립대학법인 秋田(아키타) 대학	秋田(아키타) 대학	秋田縣(아키타현)	5
국립대학법인 山形(야마가타) 대학	山形(야마가타) 대학	山形縣(야마가타현)	5
국립대학법인 福島(후쿠시마) 대학	福島(후쿠시마) 대학	福島縣(후쿠시마현)	4
국립대학법인 茨城(이바라키) 대학	茨城(이바라키) 대학	茨城縣(이바라키현)	4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 대학	筑波(쓰쿠바) 대학	茨城縣(이바라키현)	8
국립대학법인 宇都宮(우쓰노미야) 대학	宇都宮(우쓰노미야) 대학	도치기현	4
국립대학법인 群馬(군마) 대학	群馬(군마) 대학	群馬縣(군마현)	5
국립대학법인 埼玉大學(사이타마대학)	埼玉(사이타마)대학	埼玉縣(사이타마현)	4
국립대학법인 千葉(치바) 대학	千葉(치바) 대학	千葉縣(치바현)	6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대학	東京(도쿄) 대학	東京都(도쿄도)	7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의과치과대학	東京(도쿄) 의과치과대학	東京都(도쿄도)	5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외국어대학	東京(도쿄) 외국어대학	東京都(도쿄도)	3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학예대학	東京(도쿄) 학예대학	東京都(도쿄도)	4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농공대학	東京(도쿄) 농공대학	東京都(도쿄도)	4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예술 대학	東京(도쿄) 예술 대학	東京都(도쿄도)	4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공업대학	東京(도쿄) 공업대학	東京都(도쿄도)	4
국립대학법인 東京(도쿄) 해양대학	東京(도쿄) 해양대학	東京都(도쿄도)	4
국립대학법인 お茶の水(오차노미즈) 여자대학	お茶の水(오차노미즈) 여자대학	東京都(도쿄도)	4

부 록

국립대학법인의 명칭	국립대학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정수
국립대학법인 전기통신대학	전기통신대학	東京都(도쿄도)	4
국립대학법인 一橋(히토쓰바시) 대학	一橋(히토쓰바시) 대학	東京都(도쿄도)	4
국립대학법인 横浜(요코하마) 국립대학	横浜(요코하마) 국립대학	神奈川県(카나가와현)	4
국립대학법인 新潟(니이가타) 대학	新潟(니이가타) 대학	新潟縣(니이가타현)	6
국립대학법인 長岡(나가오카) 기술과학대학	長岡(나가오카) 기술과학대학	新潟縣(니이가타현)	3
국립대학법인 上越(조에쓰) 교육대학	上越(조에쓰) 교육대학	新潟縣(니이가타현)	3
국립대학법인 富山(도야마) 대학	富山(도야마) 대학	富山縣(도야마현)	4
국립대학법인 富山(도야마)의과약과대학	富山(도야마) 의과약과대학	富山縣(도야마현)	5
국립대학법인 金澤(가나자와) 대학	金澤(가나자와) 대학	이시카와현	6
국립대학법인 福井(후쿠이) 대학	福井(후쿠이) 대학	福井縣(후쿠이현)	6
국립대학법인 山梨(아마나시) 대학	山梨(아마나시) 대학	山梨縣(아마나시현)	6
국립대학법인 信州(신슈) 대학	信州(신슈) 대학	長野縣(나가노현)	6
국립대학법인 岐阜(기후) 대학	岐阜(기후) 대학	岐阜縣(기후현)	5
국립대학법인 靜岡(시즈오카) 대학	靜岡(시즈오카) 대학	靜岡縣(시즈오카현)	4
국립대학법인 浜松(하마마쓰) 의과대학	浜松(하마마쓰) 의과대학	靜岡縣(시즈오카현)	4
국립대학법인 名古屋(나고야) 대학	名古屋(나고야) 대학	愛知縣(아이치현)	7
국립대학법인 愛知(아이치) 교육대학	愛知(아이치) 교육대학	愛知縣(아이치현)	4
국립대학법인 名古屋(나고야) 공업대학	名古屋(나고야) 공업대학	愛知縣(아이치현)	3
국립대학법인 豊橋(도요하시) 기술과학대학	豊橋(도요하시) 기술과학대학	愛知縣(아이치현)	3
국립대학법인 三重(미에) 대학	三重(미에) 대학	三重縣(미에현)	5
국립대학법인 滋賀(시가) 대학	滋賀(시가) 대학	滋賀縣(시가현)	4
국립대학법인 滋賀(시가) 의과대학	滋賀(시가) 의과대학	滋賀縣(시가현)	4
국립대학법인 京都(교토) 대학	京都(교토) 대학	京都府(교토후)	7
국립대학법인 京都(교토) 교육대학	京都(교토) 교육대학	京都府(교토후)	3
국립대학법인 京都(교토) 공예섬유대학	京都(교토) 공예섬유대학	京都府(교토후)	4
국립대학법인 大阪(오사카) 대학	大阪(오사카) 대학	大阪府(오사카후)	7
국립대학법인 大阪(오사카) 외국어대학	大阪(오사카) 외국어대학	大阪府(오사카후)	2

(일본) 국립대학법인법

국립대학법인의 명칭	국립대학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정수
국립대학법인 大阪(오사카) 교육대학	大阪(오사카) 교육대학	大阪府(오사카후)	4
국립대학법인 兵庫(효고) 교육대학	兵庫(효고) 교육대학	兵庫縣(효우고현)	3
국립대학법인 神戸(고베) 대학	神戸(고베) 대학	兵庫縣(효우고현)	8
국립대학법인 奈良(나라) 교육대학	奈良(나라) 교육대학	奈良縣(나라현)	2
국립대학법인 奈良(나라) 여자대학	奈良(나라) 여자대학	奈良縣(나라현)	4
국립대학법인 和歌山(와카야마) 대학	和歌山(와카야마) 대학	和歌山縣(와카야마현)	4
국립대학법인 鳥取(돗토리) 대학	鳥取(돗토리) 대학	鳥取縣(돗토리현)	5
국립대학법인 島根(시마네) 대학	島根(시마네) 대학	島根縣(시마네현)	6
국립대학법인 岡山(오카야마) 대학	岡山(오카야마) 대학	岡山(오카야마현)	7
국립대학법인 廣島(히로시마) 대학	廣島(히로시마) 대학	廣島縣(히로시마현)	7
국립대학법인 山口(아미구찌) 대학	山口(아미구찌) 대학	山口縣(아미구찌현)	5
국립대학법인 德島(도쿠시마) 대학	德島(도쿠시마) 대학	德島縣(도쿠시마현)	5
국립대학법인 鳴門(나루토) 교육대학	鳴門(나루토) 교육대학	德島縣(도쿠시마현)	3
국립대학법인 香川(가가와) 대학	香川(가가와) 대학	香川縣(가가와현)	6
국립대학법인 愛媛(에히메) 대학	愛媛(에히메) 대학	愛媛縣(에히메현)	5
국립대학법인 高知(고우찌) 대학	高知(고우찌) 대학	高知縣(고우찌현)	6
국립대학법인 福岡(후쿠오카) 교육대학	福岡(후쿠오카) 교육대학	福岡縣(후쿠오카현)	3
국립대학법인 九州(규슈) 대학	九州(규슈) 대학	福岡縣(후쿠오카현)	8
국립대학법인 九州(규슈) 공업대학	九州(규슈) 공업대학	福岡縣(후쿠오카현)	4
국립대학법인 佐賀(사가) 대학	佐賀(사가) 대학	佐賀縣(사가현)	6
국립대학법인 長崎(나가사키) 대학	長崎(나가사키) 대학	長崎縣(나가사키현)	6
국립대학법인 熊本(구마모토) 대학	熊本(구마모토) 대학	熊本縣(구마모토현)	6
국립대학법인 大分(오이타) 대학	大分(오이타) 대학	大分縣(오이타현)	6
국립대학법인 宮崎(미야자키) 대학	宮崎(미야자키) 대학	宮崎縣(미야자키현)	6
국립대학법인 鹿兒島(가고시마) 대학	鹿兒島(가고시마) 대학	鹿兒島縣(가고시마현)	6
국립대학법인 鹿屋(카노야) 체육대학	鹿屋(카노야) 체육대학	鹿兒島縣(가고시마현)	2
국립대학법인 琉球(류큐) 대학	琉球(류큐) 대학	沖繩縣(오끼나와현)	5

부 록

국립대학법인의 명칭	국립대학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정수
국립대학법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神奈川県(카나가와현)	2
국립대학법인 종합연구대학원 대학	종합연구대학원 대학	神奈川県(카나가와현)	2
국립대학법인 北陸(호쿠리쿠) 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	北陸(호쿠리쿠) 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	石川県(이시카와현)	4
국립대학법인 奈良(나라) 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	奈良(나라) 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	奈良縣(나라현)	4
국립대학법인 筑波(쓰쿠바) 기술단지대학	筑波(쓰쿠바) 기술단지대학	茨城縣(이바라키현)	2
국립대학법인 高岡(타카오카) 단기대학	高岡(타카오카) 단기대학	富山縣(도야마현)	2
비고			
<p>1. 종합연구대학원 대학,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北陸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 및 奈良(나라) 첨단과학기술대학원 대학은 학교교육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대학으로 한다.</p> <p>2. 종합연구대학원 대학은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과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및 독립행정법인 미디어교육개발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하에 교육연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p> <p>3. 이 표의 각 항의 제4란에서 열거하는 이사의 인원이 2인인 당해 각 항의 제1란에 열거하는 국립대학법인이 1인 이상의 비상근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 당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이 표의 적용에 관해서는 각각 당해 각 항의 제4란 중 「2」는 「3」으로 한다.</p>			

별표 2 (제 2 조, 제 5 조, 제24조, 부칙 제 3 조 관계)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의 명칭	연구 분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정수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인간문화연구기구	인간의 문화 활동과 인간, 사회 및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東京都(도쿄도)	4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자연과학연구기구	천문학, 물질과학, 에너지과학, 생명과학, 타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東京都(도쿄도)	5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	고에너지 가속기에 의한 소립자, 원자핵과 물질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구와 고에너지 가속기의 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茨城縣(이바라키현)	4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정보·시스템연구기구	정보에 관한 과학의 종합 연구와 당해 연구를 활용한 자연 및 사회에서의 제 현상 등의 체계적인 해명에 관한 연구	東京都(도쿄도)	4